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293-10

INDONESIA 2011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NTS 국세청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293-10

INDONESIA 2011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NTS 국세청

머 리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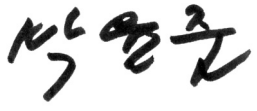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그 동안 세정간담회 등에서 우리 해외진출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무안내책자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이 증가하여 현지 세무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세무안내책자를 증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Contents

Ⅰ. 인도네시아 개관 ····· 1

1. 국가 일반사항 ····· 3
2.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 5
3.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투자 현황 ····· 11

Ⅱ. 인도네시아 조세제도 ····· 15

1. 인도네시아 조세제도의 특징 ····· 17
2. 신고 및 납세방법 ····· 18
3. 인도네시아 법인소득세 ····· 20
4. 인도네시아 개인소득세 ····· 28
5. 인도네시아의 원천징수제도 ····· 37
6. 조세조약 ····· 42
7.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 ····· 47
8. 수입관세 ····· 54
9. 기타 인도네시아의 세제 ····· 57
10. 세금우대정책 ····· 58
11. 인도네시아의 세무조사 ····· 62
12. 이전가격과세제도 ····· 66
13. 과세불복제도 ····· 76
14. 압류 등 체납처분 ····· 78



Contents

Ⅲ.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 79

1. 인도네시아 경제활동 환경 ····· 81
2.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절차 ····· 86
3. 인도네시아 외환제도 ····· 94
4.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Corridor 계획 ····· 95

Ⅳ. 진출기업 애로사항 ····· 101

1. 투자 ····· 103
2. 경영 ····· 104
3. 세정 ····· 105

[첨부]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 106



Ⅰ. 인도네시아 개관

1. 국가 일반사항
2.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3.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투자현황

Ⅰ. 인도네시아 개관

1. 국가 일반사항

국 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위 치	동남아시아
면 적	190만㎢(한반도의 9배) ＊ 도서 수 : 17,508개(무인도 7,133개)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 연평균 최고기온: 25～28℃, 습도: 73～87℃ ＊ 우기(11～3월), 건기(4～10월)
수 도	자카르타(인구 약 1,200만명, 면적 661㎢/서울605㎢)
인 구	약 2억 4,000만명(세계 4위)
주요도시	자바(Java)섬 :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 수마뜨라(Sumatera)섬 : 메단, 빨렘방, 빠당 깔리만딴(Kalimantam)섬 : 뽄띠아낙 술라웨시(Sulawesi)섬 : 마카사르 발리(Bali)섬 : 덴빠사르
민 족	자와족(35%),
언 어	공용어 :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 자바어, 순다어 등 지방어 및 지방사투리 포함 모두 583종
종 교	이슬람교(86%),기독교(6%),가톨릭(3%),불교(2%),힌두교(1.8%)
건국(독립)일	1945. 8. 17.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Susilo Bambang Yudhoyono) ＊ 2009.10.20. 집권 2기 취임
식민지시대	1596년～1942년 : 네덜란드 1942년～1945년 : 일본
화폐단위	Rupiah
시 차	서부(자카르타):-2시간, 중부(발리):-1시간, 동부: 0시간

□ 인도네시아 약사

○ 기원 100만년전 인류 최초의 직립원인 자바 원인(Java Man) 발견

○ 고대왕국시대

- 7세기 : 스리위자야(Sriwijaya)왕국(불교왕조)
  - 말레이반도와 수마뜨라의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발흥
- 13세기 : 마쟈파히트(이슬람왕조, 인도네시아 전역을 통일한 최초 왕조)
  - 불교, 힌두교, 애니미즘 등을 포용하고, 이슬람교와 문화를 전역에 확산

○ 식민지시대

- 1596년 ~ 1942년 : 네덜란드
- 1942년 ~ 1945년 : 일본

○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대

- 1945.8 :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선언 및 헌법 채택, 수카르노 대통령 취임
- 1966.3월 :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수하르토 장군에 실권 이양
- 1966년~1998년 : 수하르토 체제(Orde Baru 신질서)
  - 실용주의 정책, 시장경제도입, 외국인투자 유치 및 규제 완화
  - 군부의 이중기능(정치참여)
  - 자바섬 인맥 중심주의, 민족간 경제불균형 심화, 족벌체제, 부정부패
  - 화교의 정치활동 제한과 문화적 탄압
  - 정당정치 변화(Golkar당 주도)
  - 1998.5월 피플 파워에 의해 하야, 하비비 대통령 취임(과도정부)
- 1999.10월 : 와히드 대통령, 메가와띠 부통령 취임
- 2001.7월 : 부패혐의로 와히드 대통령 탄핵, 메가와띠 부통령이 승계
- 2004.10월 : 유도유노 대통령, 유숩깔라 부통령 취임
- 2009.10월 : 유도유노 대통령, 부디오노 부통령 취임
  - 성장과 일자리 창출
  - 관료주의 타파
  - 투자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유치

2.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 생활 일반

○ 주거

- 지역별 인프라 및 문화생활의 격차가 심한 편이며, 외국인들은 편리한 생활여건 및 인프라가 있는 자카르타 및 인근 위성도시에 거주
- 전세 개념이 없고, 1년 혹은 2년 단위 임대계약을 하며, 원룸 아파트의 한 달 임대료는 600달러 정도이고, 쓰리룸 대형 아파트는 2,000달러 정도임

○ 생필품 구입

-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카르타 및 인근 위성도시, 발리, 수라바야 등에는 한국식품점이 있으며, 까르푸, 헤로, 하이퍼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한국음식을 구입할 수 있음

○ 교통

- 지하철이 없고, 자카르타의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도착 시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며,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이고, 간선 버스인 뜨란스 자카르타, 중소형 버스인 꼬빠자, 메트로 미니 등이 있음
- 택시는 일반택시인 Express, Gamya,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Blue Bird, 고급택시인 Silver Bird가 있음

○ 통신

- 집전화는 국영기업인 Telkom 사의 유선전화를 사용하며, 공중전화(Telepon Umum)는 많지 않고, 전화방(인터넷, 전화)인 Warnet를 주로 이용함
- 휴대전화 보급률이 90%에 달하며, 단기 체류 및 출장시에 선불 통화 바우처를 구입하여 편리하게 이용가능

○ 의료

- 종합·대학 병원인 루마사낏, 개인병원 보다는 규모가 큰 클리닉, 주택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쁘락떽 독떠르, 보건소인 뿌스꺼스마스 등이 있음

○ 교육

- 외국인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까지 국제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고, 입학과정, 입학시기, 수업내용 등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 '10년 경제성과

○ '10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6.1% 기록

- 수출과 수입은 2009년 대비 각각 35.4%, 40.05% 증가한 1,577억달러, 1,356억달러를 달성하여 무역수지 흑자 221억 달러 기록
  - 팜 오일(117억3,000만 달러), 석탄, 고무(84억1000만 달러), 카카오(13억 8,000만 달러), 구리 등이 수출의 대부분 차지
- 1인당 GDP는 GDP 증가와 루피아 평가절상으로 3천 달러 기록
- 12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전년 대비 45.5% 증가한 962억 달러 기록

○ '10년 주요 경제성과

(단위 : 백만달러, 달러,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GDP	432,000	510,800	528,000	714,823
수 출	114,100	137,020	116,510	157,730
수 입	74,473	129,197	96,829	135,610
무역수지	39,627	7,823	19,681	22,120
1인당 GDP	1,938.2	2,269.9	2,590.1	3,004.9
경제성장률	6.32	6.1	4.5	6.1
외환보유고	56,920	51,639	66,104	96,200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2010년 경제성장은 민간소비와 투자가 기여

- 2010년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56.7%와 32.2%를 기록
- 2010년 수입은 2009년보다 높은 23.0%의 기여도를 기록
-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소비는 9.1% 기여도를 기록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민간소비	60.6	58.7	56.7
정부소비	8.4	9.6	9.1
투 자	27.7	31.1	32.2
인벤토리(통계적 오차 포함)	2.2	-3.2	0.4
수 출	29.8	24.2	24.6
수 입	28.7	21.4	23.0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Java 섬의 경제비중은 58%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수마뜨라 섬과 깔리만딴 섬이 각각 23.1%와 9.2%를 기록

○ 2010년 투자는 추정치 160조 루피아를 초과한 208조 루피아를 기록. 2011년 투자목표는 240조 루피아로 설정

- 국내투자에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한 부문은 식음료분야로 총 투자의 27.1%(16조4100억 루피아)를 기록
- 다음으로 교통·저장·통신 22.7%(13조7900억 루피아), 농업관련 프로젝트 14.4%(8조7300억 루피아)를 각각 기록
- 외국인은 주로 교통·저장·통신 프로젝트에 50억5000만 달러(31.1%), 광업에 22억3000만 달러(13.8%), 전기·가스·수도 프로젝트에 14억3000만 달러(8.8%)를 각각 투자

□ '11년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6.4% 목표

- 재무부는 2011년 경제성장률을 6.3%로 목표했으나 의회는 고용 창출을 위해 경제성장률을 6.4%로 높였음.(0.1%P 성장률 증가는 4만 명의 추가 고용효과 발생 기대)
- 정부는 2011년 1,070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

- 환율 목표는 2010년 1만600루피아에서 13% 절상된 9,250루피아에서 유지될 전망

○ ’11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의회 제출 안	의회 수정 확정안
경제성장률(%)	6.3	6.4
인플레이션(%)	5.3	5.3
환율(루피아/달러)	9,300	9,250
이자율(%)	6.5	6.5
인도네시아 Crude 오일(달러/배럴)	80	80
원유 생산량(배럴/일)	970,000	970,000
GDP(루피아)	7,006.7조	7,019.9조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 ’11년 예산운용

○ 인도네시아 의회는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1,086조4천억 루피아 재정수입 규모(3조7천억 루피아 규모의 Grant 포함)를 18조5천억 루피아 증가한 1,104조9천억 루피아로 증액

- 2011년 조세수입 규모는 GDP의 12.1% 규모인 850조3천억 루피아로 당초 계획보다 10조7천억 루피아 증가
- VAT에 대한 조세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나, 개인 및 법인의 조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
- 인도네시아의 조세는 개인소득세보다 법인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 주도 산업군인 오일가스·광업·농업·산림 부문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전망
- 관세 수입은 62조7천억 루피아로 늘어날 전망

- 비조세수입은 당초 243조1천억 루피아에서 7조8천억 루피아 증가한 250조9천억 루피아로 증액

○ ’11년 재정수입 예산

(단위 : 조 루피아)

구 분	의회 제출 안	의회 수정 확정안
Income Tax	414.5	420.49
VAT	360.3	312.10
Property Tax	27.7	27.68
Fee for Land and Property Uses(BPHTB)	0.0	
Customs and Excise	60.7	62.7
Other Taxes	4.2	4.2
Import Duty	18	17.9
Export Duty	5.1	5.1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 인도네시아 의회는 재정지출 규모를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1,202조1천억 루피아 제정지출규모에서 27조5천억 루피아 증가한 1,229조6천억 루피아로 증액

- 2011년 연료보조금은 95조9천억 루피아로 2010년 88조 9천억 루피아보다 증가. 그러나 전기보조금은 2010년 55조1천억 루피아에서 약 15조 루피아 감소한 40조7천억 루피아로 책정
- 식품보조금은 2010년 13조9천억 루피아에서 15조 3천억 루피아로 증가
- 그러나 비료 및 종자에 대한 정부의 2011년 보조금은 2010년(비료: 18조 4천억 루피아, 종자: 2조 3천억 루피아)에 비해 감소

○ ’11년 재정지출 예산

(단위 : 조 루피아)

구 분	예 산
총 예산	1,229,6
- 중앙정부	836.6
- 지방정부	393.0
보조금	187.6
- 연료	95.9
- 전기	40.7
- 식품	15.3
- 비료	16.4
- 종자	0.12
- 공공서비스	1.9
- 신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자율	2.6
- 조세보조금	14.7
해외 Grants	1.457
MRT(Mass Rapid Transit)	0.592
수처리 및 위생 프로젝트	0.005
기본 교육 프로젝트	0.530
인프라 개선	0.330
Special allocation fund	25.23
교육	10.0
보건	3.0
도로 인프라	3.9
관계용수 인프라	1.3
수처리 인프라	0.419
위생 인프라	0.419
농업	1.8
산림	0.400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3.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투자 현황

□ 우리나라와의 경제 · 외교 관계

○ 한-인도네시아 외교관계

- 1971.08월 :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 1973.09월 :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1989.11월 : 이중과세방지협정
- 1991.02월 : 투자보장협정
- 2005.12월 :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 2009.06월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체결

○ 한-인도네시아 교역규모

- 2010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수·출입 교역규모는 228억8,3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교역국 중 10위를 기록
- 2010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규모는 88억9,700만 달러로 2009년 대비 48.3% 성장하였고, 한국의 10대 수출대상국
-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규모는 139억8,600만 달러로 2009년 대비 51% 성장하였고, 한국의 7대 수입국

(단위 : 백만달러)

순 위	국 가	2009년	2010년
총 교역규모		363,534	466,384
1	중 국	140,949	188,412
2	일 본	71,199	92,472
3	미 국	66,689	90,219
4	사우디아라비아	23,594	31,377
5	대 만	19,352	28,477
6	홍 콩	21,148	27,240
7	호 주	19,999	27,098
8	독 일	21,119	25,007
9	싱가포르	21,489	23,094
10	**인도네시아**	**15,264**	**22,883**

○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동향

- 인도네시아 투자 초기에는 자카르타 및 인근지역에 봉제, 전자부품 제조 공장설립 위주로 진출하였으며, 근래에는 자바섬 전체를 비롯하여 깔리만딴, 수마뜨라 지역의 자원분야와 팜, 카사바, 옥수수 재배 등에 대한 투자 증대
- LG전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진출에 따라 부품 및 중간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동반 진출
- 투자기업의 50%이상 자바섬에 진출해 있고, 자카르타에는 도소매, 창고, 유통, 제조업 본사 등이 있으며,
- 자카르타 인근 버까시(Bekasi)에는 산업공단을 중심으로 전기, 전자, 관련 부품기업이 진출했고, 땅그랑(Tangerang)지역은 신발, 섬유산업 기업이 주로 진출

○ 연도별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101	140	164	182	186	356
금액	429.5	475.7	627.7	301.1	624.6	328.5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업종별 현황

(단위 : 개)

분야	업체수	분야	업체수	분야	업체수
의류・봉제	217	종이・목재	50	음식・숙박	112
섬유	108	통신・컴퓨터	45	도・소매	84
금속・기계	81	건설・선박	45	무역・금융	51
전기・전자	72	고무・플라스틱	54	기타	320
석유・화학	57	운송・창고	50	계	1,346

자료 : 코트라 인도네시아 지사

- 2011년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한국기업은 1,500여개사로, 이 중 섬유 및 섬유 관련 업체가 350여개 사, 전기 및 전자관련 업체 200여개 사로 주종을 이룸



Ⅱ. 인도네시아 조세제도

1. 인도네시아 조세제도의 특징
2. 신고 및 납세방법
3. 인도네시아 법인소득세
4. 인도네시아 개인소득세
5. 인도네시아 원천징수제도
6. 조세조약
7.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8. 수입관세
9. 기타 인도네시아의 세제
10. 세금우대정책
11. 인도네시아의 세무조사
12. 이전가격과세제도
13. 과세불복제도
14. 압류 등 체납처분

Ⅱ. 인도네시아의 조세제도

1. 인도네시아 조세제도의 특징

□ 조세체계

국 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재산세 해외출국에 대한 출국세 등
지방세	재건축세, 자동차세, 텔레비전세, 유흥세 등
관 세	수출입관세, 담배소비세와 주세는 통관 시에 과세

□ 세법개정의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세법은 1984년 제정 이래 경제성장 및 기업활동의 복잡화에 발맞추어 개정되어 옴

1995년 개정세법	• 원천징수세 적용 범위를 확대 • 비과세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
2000년 개정세법	• 누진세 실효성 강화 : 과세구간 세분화(3단계 → 5단계), 과세표준기준 인상 • 개인납세번호 등록 강화 • 부가가치세 환급 신속
2010년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등 • 이전가격 관련 법령 정비(APA · MAP 규정 발표)

□ 투자자 전담 세무서(LTO good- governance framework) 존재

○ 인도네시아에는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를 전담하는 세무서가 설치되어 있어 조세관련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임

2. 신고 및 납세방법

□ 개 요

○ 특정기간 또는 연간 세금은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납세신고를 통하여 세무당국에 설명함

○ 세금납부와 신고는 월간/연간 모두 적용될 수 있음

□ 월별신고

세 금 종 류	납부기한	신고기한
21/26조 소득세	익월 10일	익월 20일
23/26조 소득세	익월 10일	익월 20일
25조 소득세	익월 15일	익월 20일
22조 소득세-징수의무자	익월 10일	익월 20일
4조(2)항 소득세	익월 10일	익월 20일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과세대상기업	신고기한 전	익월 말일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부가세 징수원	신고기한 전	익월 말일

□ 연간신고

세 금 종 류	납부기한	신고기한
법인소득세	결산최종일로부터 4개월되는 달 말일(신고전)	결산최종일로부터 4개월되는 달 말일
개인소득세	결산최종일로부터 3개월되는 달 말일(신고전)	결산최종일로부터 3개월되는 달 말일
부동산 재산세	세무서로부터의 납세통보서 수령이후 6개월 이내	해당사항 없음

□ 신고기한 연장 등

○ 연차 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는 2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기한 전에 세무당국에 임시 산출세액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통보 이전에 납부하여야 함. 최종 산출액이 임시 산출액보다 높으면 부족분 납부시점까지 차액기준으로 2%의 지연이자가 부과됨

○ 신고기한 전까지 신고를 못할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고서한을 발부하게 됨. 이를 무시할 경우, 세무당국은 추징세금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개별 신고하여, 전국에 걸쳐 사업장 또는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등록된 지방세무서에 납세의무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 지정 세무서(PMA, 공공, 국영, LTO, MTO)에 등록된 납세자의 경우 지정된 세무서에 부가세를 통합 신고해야 함

○ 일반적으로, 납세신고서류는 전통적인 하드카피로 준비해야 하나, 세무당국은 모든 정보를 세무당국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만드는 e-tax 신고서가 의무로 되어 있으며 e-tax 신고서는 하드카피 및 소프트 카피를 관련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정보서비스업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지연납부에 대해서는 매달 2%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최대 48%로 부과됨(1일 이상도 1개월로 간주)

○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에 대해서는 다음의 벌금이 부과됨

(단위 : 루피아)

세 금 종 류	벌금
부가세 신고	500,000
기타 월차신고	100,000
개인소득세 신고	100,000
법인소득세 신고	1,000,000

3. 인도네시아 법인소득세

1) 인도네시아 법인소득세의 기본 사항

□ **납세의무자**

○ 인도네시아 법무부의 설립허가(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설립한 현지법인은 국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짐

- 외국인 직접투자회사의 사업허가는 30년 간 유효하며, 추가 30년 간 사업허가 연장 가능, 외국인의 100% 단독 투자를 허용되나 이 경우 15년 내 최소 1%의 지분양도 의무
-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나 석유시추 사업 등은 현지합작이 의무화

○ 인도네시아 내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보유한 외국 법인은 인도네시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짐

-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의 법인 설립이나 고정사업장 마련은 인정하지만 일정한 금융업을 제외한 업종의 지점 설립은 불허

□ **적용세율**

○ 2010년부터 단일세율 25% 적용

- 총 발행주식의 최저 40%를 공개한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에서 5%가 할인된 20% 적용,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 48억 루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 적용

○ 과세기간은 1.1～12.31이나 신청에 따른 변경 가능

○ 원칙적으로 세법상 수익인식기준은 발생주의

- 다만, 소규모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주의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 과세표준의 계산

○ 사업이익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초로 계산 당기순이익에 세무상 익금·손금을 가감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익을 획득, 입수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하지만 회계상 비용이 세무상 손금산입이 가능할 경우에도 시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손금불산입 비용
  -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BIKs:Benefit-in-kind)(예:사택, 회사제공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의 50% 등). 다만, 회사가 사업장에서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대(캐터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혜택(방호복 및 작업복, 통근교통비, 선원 등에 대한 숙박제공, 특정의 원격지에서 제공되는 현물지급비용,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취득 및 유지비용의 50%)는 손금산입
  - 주주, 사용자 등의 사적 용도의 지출 비용
  - 사업과 관련 없는 선물 및 기부. 단, 이슬람교에 의한 의무 기부금은 예외
  - 각종 준비금(적립금). 단, 은행 및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권예탁협의회(LPS)의 예탁보증 준비금, 광업회사의 준비금, 산림협회 산림준비금, 산업소비진흥협회의 유지 및 폐쇄 준비금은 예외
  - 소득세 납부액
  - 추징세액 및 과징금 납부액
  - 이익 배당액
  - 생명, 건강 및 사고보험의 회사 부담분과 재무부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연금펀드(Pension fund)의 회사 부담분. 단, 해당 금액이 종업원의 과세대상 급여로 포함할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

- 최종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관련된 비용. 예로 정기예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 면세 대상인 소득과 관련된 비용. 예: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수취배당의 목적의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 출자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지 않는 파트너십과 협회의 출자자에 대한 급여와 보수

○ 결손금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별도로 정한 특정 사업 및 특정 지역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기한은 최고 10년까지 연장 가능
- 이월 결손금의 소급적용은 허용하지 않으며 세금 병합 납부도 유효하지 않음

○ 배당

- 배당금 수취자가 거주자인 경우 15% 원천징수로 과세종료, 비거주자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준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20%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 인도네시아 상법상 법인(Perseroan Terbatas : PT), 소비조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인도네시아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 배당소득은 법인세 면세(이중과세 방지)
  - 배당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준하여 처분
  - 투자법인의 지분율이 최소 25%이상이 되는 경우

○ 세무상 자본이득에 관한 과세

- 자본이득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며, 자본손실도 공제 가능

※ 자본이득 세율
- 상장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처분이익의 0.1%,
- 기업상장의 경우 기존주주는 기업공개 시점의 주식가치의 0.5%,
- 자산임대수익은 최종 임대료 수입에 대해 10%세율로 과세 종결
-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매각은 조세협약에서 보호되지 않아 5% 원천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인정과세표준율

- 이하의 업종은 세무당국에 따라 결정되는 인정과세 표준율 적용

업 종	인정과세표준율 (매출액기준)	적용세율 (매출액기준)
국내해운회사	4%	1.2%
국내항공회사	6%	1.8%
국제해운 및 항공회사	6%	2.64%
석유・가스채굴용역의 외국기업	15%	3.75%
특정 상공부 산하 주재사무소	수출가액의 1%	0.25%

○ 특정사업활동

- Upstream Oil, Gas 및 지열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생산물분배계약(PSCs)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
- 금속(Metal), 광물(Mineral) 및 석탄(Coal) 광구와 관련된 특정 기업들은 CoW(Contract of works)에 의해 법인세를 산정

○ 기타 과세표준 산정기준

- 혜택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은 자산화 가능
- 대손발생이나 준비금 등의 이월액은 동 자산을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시점이 아니라, 대상자산이 회수 불능으로 판명되거나 폐기된 시점에 손금 산입
- 접대비 리스트(세무서 지정양식)및 지출증빙을 갖춘 접대비로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된 금액은 손금인정

- 부채 등으로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위장된 경우 해당부채를 자본으로 간주하는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 고정자산

○ 감가상각

- 1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여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

구분	상각률	종류
1분류	50% 정률법/ 25% 정액법	내용연수 4년 이하 자산 예) 컴퓨터, 프린터, 스캔너, 가구 및 목재 비품, 사무실 비품, 오토바이 등
2분류	25% 정률법/ 12.5% 정액법	내용연수 4년 초과 8년 이하 자산 예) 에어컨 선풍기 등 기계장치, 자동차, 컨테이너, 농업용 기계장치 등
3분류	12.5% 정률법/ 6.25% 정액법	내용연수 8년 초과 16년 이하 자산 예) 일반 광산업용 기계, 봉제/목재/기계제작 사업용 기계, 운송/통신용 중장비 등
4분류	10% 정률법/ 5% 정액법	내용연수 20년 초과 예) 건설업종 중장비기계, 기관차, 철도운송도구, 대형선박, 부두
건물	5% 정액법	내용연수 20년인 상설건물
	10% 정액법	내용연수 10년인 비상설건물

- 창업(법인설립)비 및 증자 관련 비용은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 전액 손금처리 또는 상기 1,2,3,4 분류별 비율로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상각
- 1년 이상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권 취득 비용은 생산량 비례법에 의거 상각
- 1년 이상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 광업권, 벌목권, 및 기타 천연자원 개발권도 생산량 비례법 적용. 다만, 연도별 감가상각비는 총액의 20% 초과해서는 안 됨

○ 자산이전

- 회사의 자산(토지 및 건물 제외)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손익(매각가-세무상 장부가)이 발생함. 양도차익은 당연 과세대상이나, 양도차손은 해당자산이 사업활동(running of the business)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만 세무상 공제가 가능

○ 고정자산재평가

- 루피아 장부기장을 하는 회사 및 고정사업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세무상 목적으로 비유동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고 자산재평가는 매 5년마다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 관련 자산(건물, 토지는 제외 가능)이 포함되어야 함
- 재평가는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가치는 정부가 승인한 평가법인에 의해 산정되어야 한다. 국세청장(DGT)은 해당 금액이 자산의 시장 또는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가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국세청장의 승인이 완료되면, 감가상각은 새로운 세무상 자산가치에 대해 신규자산 취득과 동일하게 적용함. 기존 장부상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재평가차액, 공정가치-세무상 장부가액)은 10%의 세율로 최종 분리 과세되며 국세청장의 승인 하에 12개월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함
- 재평가 후 1,2분류에 포함되는 자산은 최소한 각각의 내용연수가 종료할 때 까지는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않아야 한다. 토지, 건물 및 3,4분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소한 재평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은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않아야 함. 만약, 해당기간 내에 처분·양도 시에는 최초 재평가차액에 추가로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분리과세 됨(이는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자산 양도, 비과세 사업합병, 결합 또는 사업분할 등 과정에서의 자산 양도, 회복불능 손상으로 인한 자산의 처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 전년도 법인세액의 1/12를 매월 분할하여 선납 가능

- 납부기한은 익월 15일, 환급신고서는 익월 20일까지 제출
- 신설법인, 금융회사, 은행 또는 국·공여회사, 복수점포를 가진 소매점(음식점 및 차량판매 제외)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별도의 계산방법 적용

○ 결산시 환급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지연으로 법인의 현금흐름을 압박할 수 있음

2)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에 관한 과세

□ 인도네시아 내에 고정사업장(PE)을 둔 기업은 인도네시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 **고정사업장의 범위**

○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에 고정사업장의 유형을 예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예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예
• 경영 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건축·건설공사 장소 및 광물 천연자원 채굴장을 포함 • 인도네시아에서 보험계약을 하여 보험료를 수취하는 보험회사 • 인도네시아와의 조세조약을 통해서 고정사업장을 설정하는 경우 • 외국 법인을 대리하여 종속적인 형태로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 인도네시아 기업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일반적인 판매촉진, 정보수집, 품질관리 등을 행하는 상사의 주재원 사무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고정사업장의 납세의무

○ 고정사업장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

- 인도네시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소득과 인도네시아 자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
- 본점에서 지급하는 사용료, 이자 및 본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 고정사업장과 유사한 활동의 대가에 대한 세무문제

○ 기업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 기업이 보유한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유사한 종류의 소득은 그 소득이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납세의무를 짐

* 흡인력(Force of Attraction)의 원칙

- 동종의 업무활동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해석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우리 기업이 자의적 법해석에 노출

□ 본사 파견자의 고정사업장 인정여부

○ 본사 파견 기술자가 연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재하는 경우 동 본사 사원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르면 과세연도 중 183일을 넘는 기간 존재하는 건축·건설이나 컨설턴트 서비스 역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 본사파견자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무문제

- **법 인 세** : 현지 법인이 본사에 지불하는 기술 원조료에 최고 30%의 세율부과 가능
- **개인소득세** : 동 기술자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되어 그 소득에 대해 인도네시아 세법상 개인소득세 납부

○ 파견자가 현지 자회사 고용자로서 체재하면 개인소득세는 납부하나 고정사업장 인정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4. 인도네시아 개인소득세

1) 인도네시아 개인소득세의 기본사항

□ 납세의무자

○ 거주기준에 의해 납세의무 부과

○ 인도네시아 거주자 판단 기준

- 연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 내에 체류
-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의도로 거주
-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거주자 판단기준에 관한 다른 정의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 한-인도네시아 조세협약 제23조【이중과세의 방지】

• 한-인도네시아 조세협약에 따라 인니에 진출한 한국 거주자는 전체 과세소득에서 인니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환산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인니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에서 세액공제

□ 개인납세번호(NPWP) 등록의무

○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납세번호 등록의무 부여

2000.12.31 까지 규정	2001.1.1 이후 규정
• 기존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자는 개인세무등록을 면제하고 있었으나 2000년 개정세법에서 이 예외규정이 삭제	• 개정세법에서는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개인납세번호를 부여 • 인도네시아에서 납세번호를 발급받은 국민은 약 400만 명 정도 • 확정신고에서는 급여, 자산소득, 해외원천소득 및 그 외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신고의무화 • 2001년부터 자산·부채도 신고의무 항목

□ 세율구조 및 감면 · 공제제도

○ 4단계 누진세 제도

연간과세소득	세율
50,000,000 RP 이하	5%
50,000,000 RP 초과~200,000,000 RP 이하	15%
200,000,000 RP 초과~250,000,000 RP 이하	25%
250,000,000 RP 초과	30%

○ 감면

- 2009년 11월 16일부터 퇴직금(severance payments), 정부승인 연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정액 연금(lump-sum pension), 정부 사회보장 조직(Jamsostek)으로부터 지급되는 노후저축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세율이 적용됨
- 퇴직금(2년 안에 지급시 최종분리과세)

과 세 표 준	세율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	-
On the second Rp. 50,000,000	5%	2,500,000
On the next Rp. 400,000,000	15%	60,000,000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 500,000,000	25%	25% of the relevant amount

- 정부승인 연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정액 연금(lump-sum pension) 및 정부 사회보장 조직(Jamsostek)으로부터 지급되는 노후저축 소득(2년 안에 지급시 최종분리과세)

과 세 표 준	세율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	-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 50,000,000	5%	5% of the relevant amount

- 3차연도부터는 지급 시에는 최종분리과세가 아닌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됨

○ 소득 공제(Main Personal Relief)

구 분	Rp.
본인공제	15,840,000
배우자 공제	1,320,000
부양가족 (최대 3인)공제	1,320,000
의무관련 공제(총소득의 5%한도 내, 1개월 최고 Rp. 500,000)	6,000,000
Jamsostek 노후저축예금의 종업원 부담금(총소득의 2%)	Full amount
연금기금의 적립금액(총소득의 5%한도 내, 최고 1개월 Rp. 200,000)	2,400,000

※ 사회보장제도 JAMSOSTEK

인도네시아에는 종합적 사회보장제도는 없으나 노동자사회보장제도 존재

- 업무상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주 전액부담
  (상해보험 보험료는 종업원임금의 0.24～1.74%, 사망보험은 0.3%)
- 노후저축적립은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3.7%, 2% 부담
- JAMSOSTEK은 부양가족 3명까지 커버하는 의료보험 포함, 단 상기 의료보험은 임의보험으로 해당 종업원이 보다 나은 의료보험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됨(보험료는 기혼자 6%, 미혼자3%)
- 외국인은 JAMSOSTEK에 가입할 의무 면제

□ 현물 및 시설 제공

○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주택, 휴가 및 세금보상 등의 현물 및 시설제공은 종업원의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않음
(즉, 관련 비용은 법인소득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방호복, 근무복, 출·퇴근 교통비, 선원 등에 대한 숙박시설 제공 및 오지에 지급하는 현물 및 시설제공분 간주됨
- 아래 회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이는 종업원 개인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 1984년이전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 광물(Mining)회사 및 석유가스회사(PSC)
- 법인세 납부주체가 아닌 해외법인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
- 최종 분리과세 대상기업(Final-taxed companies)
- 인정과세 대상기업(Deemed-profit companies)

□ 출국세

○ 세무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거주자는 출국세가 면제되며 Kartu Keluarga (인도네시아인) 또는 SKSKP(외국인)과 같은 공식적인 가족증명서에 포함된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도 적용됨

○ 세무등록번호가 없는 개인거주자에게는 2011년말까지 출국세가 계속 적용될 것이며 외국으로 출국할 때 부과됨

○ 납부된 출국세는 해당자가 세무등록번호를 취득할 때 환급될 수 있으며, 출국세 납부한 해의 개인소득세 신고(Form 1770)를 통하여 이루어짐

여행유형	출국세(Rp)
항공	2,500,000
해상	1,000,000
육로	-

□ 과세표준의 계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임금, 상여, 근로보상금, 상금, 사업수입, 이자, 특허권 사용료. 임대료와 대손상각액 중 회수된 금액 등 국내 원천의 모든 소득금액
- 근로소득 이외 금액은 부부합산 신고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이 연 120,000,000Rp 이상인 경우 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과세, 동 금액 미만의 사업자는 재무부령에 따른 추계결정

○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액에 누진세율로 세액을 산출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과세
- 과세 후 이익분배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 인도네시아 소득세 관련 원천징수

항 목	원천징수세율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인가된 연기금이 지급하는 연금소득	소득세 누진율에 준함
“노동자퇴직금지급관리조직”에 예납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자가 은행: 20%, 지급자가 은행 외:15%
일용근로자 급여 중 日 12,000 Rp를 제외한 금액	15%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직용역대가	7.5%

○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 납부

○ 개인납세번호를 부여받아 개인소득세를 합산 신고·납부하며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개인소득세도 예납제도 시행, 내용은 법인세와 동일

2) 부동산에 대한 과세

□ 외국인 부동산 소유의 제한

○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어진 부동산에 대한 권리만을 행사 가능

* 외국인이란 인도네시아의 거주허가서(KITAP/5년 유효) 또는 기한부 거주허가서(KITAS/1～2년 유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 내국법인이므로 건축권, 토지사용권, 토지개발권 모두 인정

* 인도네시아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는 100% 외국인 출자로

현지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간접투자

□ 토지 및 건물세

○ 토지 및 건물세는 모든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한 실제 세금은 과세대상의 부동산과세적용가치(NJKP)에 의해 산정되며 세율은 0.5%임

- 면제 대상
  - 종교, 사회복지, 의료관계, 교육문화, 묘지, 고고학적 유적 등에 관련된 토지와 건물
  - 보호삼림, 자연보호지구, 관광목적 삼림, 국립공원, 마을 관리하에 있는 목초지, 기타 국유지
  - 대사관, 영사관(상대국이 인니국과 동등한 조건인 경우), 특정의 국제조직

○ 부동산과세적용가치는 특정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과세적용가액에 대한 사전 약정비율에 의거 결정됨. 현재 20%(부동산과세적용가액 10억 루피아 이하) 또는 40%(부동산과세적용가액 10억 루피아 초과)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계당국은 부동산과세적용가치 세율을 최대 부동산과세적용가액의 100%까지 인상 가능함

- 부동산과세적용가액은 재무부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의해 결정되며, 대상지역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매 1~3년마다 갱신될 수 있음
- 매년 국세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평가된 부동산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동 평가는 당해 납세자에게 과세대상통지서가 배달됨과 동시에 착수
- 과세대상통지서는 납세자가 작성 후 국세청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신된 과세대상통지서와 부동산과세적용가액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국세청은 세금부과통지서를 발급, 당해 납세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함
- 과세대상통지서에 대한 부정확한 작성, 기한내 미회신, 또는 제출의무 해태 등은 부동산 재산세 결정세액의 25% 과태료가 부과

- 특정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유, 통제, 실제적 수혜를 받는 개인 또는 조직은 부동산 재산세의 납세자로 간주되어짐. 면세대상인 부동산과세적용가액은 1,200만 루피아 이하의 범위이며, 이는 재무부에 의해 조정되어질 수 있음

□ 부동산거래세

○ 부동산거래세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자의 간주이득에 대해 과세되며, 세율은 실제양도 가액의 5%이나,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주택 및 아파트의 단순취득 관련 세율은 1%이다.

○ 일반적으로 세율은 실제양도가액 또는 부동산과세적용가액 중 높은 가액 기준의 5%이나, 정부기관에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정부 관료에 의해 관련 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공증인은 부동산취득세가 지불되기 이전에는 권리이전증서에 공증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 및 건물 취득시 의무사항

○ 부동산 명의이전으로 권리 수령자에게는 부동산 취득 관련 의무사항 발생함

○ 합당한 부동산 명의이전은 매매, 증여, 사옥, 법인에 대한 기증, 등기분할, 경매, 법원명령집행, 기업인수, 합병 등이 해당하는 바, 특정 비영리 부동산 명의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취득 의무사항이 면제될 수 있음

- NPOP(Tax Object Acquisition Value)를 기초로 하며, 대개 실제양도가액 또는 부동산과세적용가액(NJOP) 중 높은 가액을 선택함.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6천만 루피아 초과인 경우에만 과세되고, 이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됨. 토지건물을 상속하여 취득한 경우의 면세가액은 3억 루피아 이하의 범위에서 각 지방정부에 따라 결정됨
- 공증인 면전에서 토지건물 명의 이전서에 날인한 날로 발효되고, 기업의 합병, 인수, 확장 관련 부동산 취득은 관련 서류 서명일에 발효되며, 경매의 경우 관련 업체의 공매보고서가 작성된 날로 발효됨

○ 국세청은 당해 납세자의 요청에 의거, 장부가액에 의한 기업의 (흡수)합병, 인수 및 정부공사 관련 토지 및 건물 수용·보상시 부동산 취득 이행의무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음. 특정 비영리 토지·건물 명의 이전시, 국세청은 25%, 50%, 또는 75% 경감할 수 있음

○ 공증인은 부동산 취득 관련 의무사항이 이행되기 이전에는 권리이전증서에 공증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3) 외국 주재원 급여에 대한 통제

□ 외국인종업원 급여소득 인정과표제도

○ 의의

-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현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국가별, 직책별 급여소득 인정과표에 준하여 소득세 부과
- 석유 및 가스 채굴업은 재무장관이 별도로 규정

〈석유 및 가스 채굴업에 관한 인정과표의 예시〉

직 책	USD/월
General Manager	11,275
Manager	9,350
감독자 및 채굴기사	5,830
보조채굴기사	4,510
스탭	3,245

□ 주재원이 본국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과세문제

○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본국에서 과세된 소득은 현지에서 비과세

○ 주재원 급여신고 등록 강화

- 종래에는 해당 주재원에게 미신고 된 본국 급여에 대해서는 현지 법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주재원의 소득신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 2001.1.1 이후 개인세무번호(NPWP) 등록방침이 강화되면서 세무서가 적극적으로 주재원 급여에 대한 신고·등록 요청

5. 인도네시아의 원천징수제도

□ 개요

○ 인도네시아의 징세수단은 주로 원천징수시스템에 의존

○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관련소득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

○ 징수한 원천징수금액은 익월 10일까지 납부, 환급은 20일까지 서류제출

○ 수혜자가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원천세율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조세조약 참조)

□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법 PPH §21)

○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회사세무번호'로 원천징수하여 일괄납부

□ 수입과 특정물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소득세법 PPH §22)

○ 수입품에 대한 원천징수와 정부 또는 국·공영기업이 거래한 상품에 대한 원천징수 및 특정 법인이 국내에서 판매·인도한 상품에 대한 원천징수로 구분

○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경우 기본세율에 100%가 추가적으로 부과

항목	세율	과세표준
(1) 수입품(수입라이센스 보유)	2.5%	수입액(ex:CIF+수입관세)
(2) 수입품(수입라이센스 미보유)	7.5%	수입액(ex:CIF+수입관세)
(3) 정부국고 및 국영기업이 지불하는 상품판매	1.5%	거래가격
(4) 철강제품 구매	0.30%	거래가격
(5) 자동차 구매	0.45%	거래가격
(6) 종이제품 구매	0.10%	거래가격
(7) 시멘트 구매	0.25%	거래가격
(8) 사치품 구매	5%	거래가격

- 동 세금은 다음 수입품의 경우 자동적으로 또는 원천세 면세 증명서를 취득하면 징수되지 않음
  - 수입관세 및 부가세 면세 물품
  - 재수출품과 같은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 재수입을 위한 물품
- (3)의 정부 및 국영기업은 특정 공급업체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며, 물품수입업자 또는 구매자는 물품가액을 물론 제22조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함.
- (3)의 국영기업은 PT Telkom, Pertamina, Bulog, Bank Indonesia, PLN, PT Garuda Indonesia, PT Karatau Steel 및 국영은행을 말함.
- (4)~(8)의 물품 공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해졌다면 구매자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함
- 제22조의 원천세는 (1)~(8)의 당사자에게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선납하는 결과를 초래
- 면세는 특정품목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수입 및 구매되는 품목에 적용

□ 최종분리과세 성격의 소득세

○ 국내법인, 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 단체 및 지정된 개인은 다른 거주자 및 고정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지불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

항목	세율
(1)토지건물 임대료	10%
(2)토지건물 권리이전에 따른 이익	5/1%
(3)건설 시공비	2/3/4%
(4)건설 설계비	4/6%
(5)건설 감리비	4/6%
(6)예금 이자	20%
(7)채권 이자	15%

(8)주식매각 * 창업자는 상장시 시가의 0.5%를 납부하거나 매각하는 시점의 이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세금납부 선택가능(특정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가능)	0.1%
(9)복권당청금	25%
(10)선물계약, 파생상품	2.5%

- 채권 이자의 경우 수령자가 자본시장감독위원회(BAPERAM)에 등록된 뮤추얼펀드라면 세율은 2009~2010 기간은 0%, 2010~2013년까지 5%, 이후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수령자가 비거주자라면 20%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함
- 선물계약 등의 경우 초기 수익에도 적용 가능함

□ 거주자간 거래이익에 대한 소득세(소득세법 PPH §23)

○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중 다음의 경우에는 PPH 23에 근거하여 지불총액의 15% 또는 2%의 원천세율이 적용됨

- 15% 적용대상
  - 배당(법인세소득세 참조- 이익분배)
  -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스왑프리미엄 및 보증료를 포함한 이자
  - 로열티
  - 포상금 및 상금
- 2% 적용대상
  - 토지 및 빌딩 등의 자산 렌탈
  - 기술서비스
  - 경영서비스
  - 자문서비스
  - 평가서비스
  - 감정서비스
  - 회계, 기장 및 증명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 시추서비스(고정사업장 수행 제외)
- 석유가스채취관련 지원서비스
- 광물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 삼림채벌
- 폐기물처리 서비스
- 인력공급/아웃소싱
- 중개서비스
- 증권거래서비스(Stock Exchange, KSEI, KPEI 제외)
- 필름더빙서비스
- 필름믹서비스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서비스
- 설치용역서비스(건설업라이센스 있는 건설회사가 하는 경우 제외)
- 유지보수서비스(건설업라이센스 있는 건설회사가 하는 경우 제외)
- 위탁제조서비스
- 보안검사서비스
- 이벤트조직 서비스
- 패키지서비스
- 정보전파를 위해 미디어 등에 장소나 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 해충구제서비스
- 청소서비스
- 캐터링서비스

□ 비거주자가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법 PPH §26)

○ 거주자, 단체 및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가 비거주자에게 지불하는 다음의 항목에는 20%의 원천세율이 적용

- 총액기준

- 배당
-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프리미엄 및 보증료를 포함한 이자
- 로열티, 임차료 및 자산사용에 대한 지불
- 각종 서비스료
- 포상금 및 상금
- 연금 및 기타 정기적 지불
- 스왑프리미엄 및 기타 헷지거래
- 채무면제이익
-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의 세후수익

- 인정과세표준에 총액기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구 분	과세표준	적용세율 (총액기준)
(해외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 개인피보험자의 보험료 인니국 보험사의 보험료 인니국 보험사의 재보험료	 50% 10% 5%	 10% 2% 1%
비거주자의 비상장 회사주식 매각	25%	5%
도관회사(Conduit company, 인니 회사 주식 보유 중개)의 주식매각	25%	5%

6. 조세조약

□ 개요

○ 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은 사용료 수익(Service fee)에 대한 원천세 면세(Exemption) 및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의해 수령되는 배당, 이자수입 로열티, 지점이익에 대한 원천세 감면(Reduction)에 대하여 규정

○ 사용료 수익에 대한 면제 규정은 수혜당사자가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거주자증명

○ 감면 세율(Reduced rate)을 적용받기 위해서 해외 거주자(Foreign party)는 최소한 국세청에 거주자증명원(Certificate of Residence, CoR)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 소득을 지급하는 인니 거주자(Indonesian party)를 통해 이루어짐

○ 해당 증명원(ITO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한함) 미제출시에는 세무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0%의 원천세율을 적용

□ 수익적 소유자

○ 이자수익, 배당금, 로열티의 경우에는 단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만이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당사자로 인정

○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요건

- 개인(대리인으로서 소득을 수취하지 않아야 함)
- 조세조약에 명시된 기관, 혹은 인도네시아와 상대방 조세조약국가의 공정위에 의해 인정된 기관
- Offshore company(WPLN)(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로부터 소득을 수취하는 회사로서, 대리인으로서 소득을 수취하지 않아야 함)

- 증권거래소에 주시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회사
- 은행
- 기타 다음사항을 충족하는 회사

① 조세조약국에서 회사의 설립 및 거래구조가 단순조세 회피목적이 아니며, 거래를 수행할 권한이 충분한 회사의 경영진에 의해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것

②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경영활동이 있거나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

④ 인도네시아 소득이 수취국에서 과세 대상일 것

⑤ 다른 회사에 대해 이자, 로열티 및 기타 지급 등의 의무이행을 위해 총수입의 50%이상을 지출하지 않을 것

□ 조세조약상 주요 국가별 원천징수세율

체약국	주석	배당		이자	사용료	지점세
		기타	실질소유			
1. Algeria		15%	15%	15/0%	15%	10%
2. Australia		15%	15%	10/0%	15/10%	15%
3. Austria		15%	10%	10/0%	10%	12%
4. Bangladesh		15%	10%	10/0%	10%	10%
5. Belgium		15%	10%	10/0%	10%	10%
6. Brunei		15%	15%	15/0%	15%	10%
7. Bulgaria		15%	15%	10/0%	10%	15%
8. Canada		15%	10%	10/0%	10%	15%
9. China		10%	10%	10/0%	10%	10%
10. Czech Republic		15%	10%	12.5/0%	12.5%	12.5%
11. Denmark		20%	10%	10/0%	15%	15%
12. Egypt		15%	15%	15/0%	15%	15%
13. Finland		15%	10%	10/0%	15/10%	15%

체약국	주석	배당		이자	사용료	지점세
		기타	실질소유			
14. France		15%	10%	15/10/0%	10%	10%
15. Germany	1	15%	10%	10/0%	15/10%	10%
16. Hong Kong	6	10%	5%	10%	5%	5%
17. Hungary	3,4	15%	15%	15/0%	15%	20%
18. India		15%	10%	10/0%	15%	10%
19. Iran	7	7%	7%	10/0%	12%	7%
20. Italy		15%	10%	10/0%	15/10%	12%
21. Japan		15%	10%	10/0%	10%	10%
22. Jordan	3	10%	10%	10/0%	10%	20%
23. Korea(North)		10%	10%	10/0%	10%	10%
24. Korea(South)	2	15%	10%	10/0%	15%	10%
25. Kuwait	4	10%	110	5/0%	20%	10/0%
26. Luxembourg	1	15%	15%	10/0%	12.5%	10%
27. Malaysia	5	10%	10%	10/0%	10%	12.5%
28. Mexico		10%	10%	10/0%	10%	10%
29. Mongolia		10%	10%	10/0%	10%	10%
30. Netherlands		10%	10%	10/0%	10%	10%
31. New Zealand	3	15%	15%	10/0%	10%	20%
32. Norway		15%	15%	10/0%	15/0%	15%
33. Pakistan	1	15%	10%	15/0%	15%	10%
34. Papua New Guinea	7	20%	15%	15/0%	15%	20%
35. Philippines		20%	15%	15/10%	15%	20%
36. Poland		15%	10%	10/0%	15%	10%
37. Portuguese		10%	10%	10/0%	15%	10%
38. Qatar		10%	10%	10%	5%	10%
39. Romania		15%	12.5%	12.5/0%	15/12.5%	12.5%

체약국	주석	배당		이자	사용료	지점세
		기타	실질소유			
40. Russia		15%	15%	15/0%	15%	12.5%
41. Seychelles		10%	10%	10/0%	10%	20%
42. Singapore		15%	10%	10/0%	15%	15%
43. Slovakia		10%	10%	10/0%	15/10%	10%
44. South Africa	3,4	15%	10%	10/0%	10%	20%
45. Spain		15%	10%	10/0%	10%	10%
46. Sri Lanka	3	15%	15%	15/0%	15%	20%
47. Sudan		10%	10%	15/0%	10%	10%
48. Sweden		15%	10%	10/0%	15/10%	15%
49. Switzerland	1	15%	10%	10/0%	10%	10%
50. Syria		10%	10%	10%	20/15%	10%
51. Taiwan		10%	10%	10/0%	10%	5%
52. Thailand		20%	15%	15%	15%	20%
53. Tunisia		12%	12%	12/0%	15%	12%
54. Turkey		15%	10%	10/0%	10%	10%
55. Ukraine		15%	10%	10/0%	10%	10%
56. United Arab Emirates		10%	10%	5/0%	5%	5%
57. United Kingdom		15%	10%	10/0%	15/10%	10%
58. United States		15%	10%	10/0%	10/0%	10%
59. Uzbekistan		10%	10%	10/0%	10/0%	10%
60. Venezuela		15%	10%	10/0%	20/10%	10%
61. Vietnam		15%	15%	15/0%	15%	10%

주석

1.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파키스탄에 고정사업장을 둔 일방이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함.

2. 국제 선박/항공 활동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세 상호 면제됨
3. 지점수익세에 대한 조세조약상 명시가 없어 인니 과세당국은 해당 국가의 경우 인니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4. 과실송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5. 아직 효력이 발효 전이나 조약이 비준되어 비준문서가 교환될 경우, Labuan은 조세협약 기준으로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적용될 예정이며 지급이자, 배당금,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율은 10%로 적용될 것임
6. 조약이 분되어 비준문서가 교환될 경우에 한함
7. 조세협약 발효 전이며, 비준되었으나 비준서류의 상호 교환이 보류되어 있음

7.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

1)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의 기본사항

□ **개요**

○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있는 사건에 부과

□ **납세의무자**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SPPKP)이 필요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사나 기업의 주재원 사무소 등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비용 처리 불가피
- 다만, 특정 수입품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세무서장을 대행

○ 연간 매출액 6억 루피(한화로 6000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면제

□ **과세대상**

○ 과세대상 사건
- 과세지역 내에서의 사업목적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과세대상재화의 수입
- 과세지역 내에서의 사업목적 과세대상 용역의 양도
- 과세지역 내에서의 과세지역 밖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무형재화의 사용 및 소비
- 과세지역 내에서의 과세지역 밖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용역의 사용 및 소비
- 사업목적 과세대상 유·무형재화의 수출
- 사업목적 과세대상 용역의 수출

○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계약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권리의 양도
-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계약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중개상에게 또는 경매관을 통한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과세대상 재화의 자가소비 또는 무상제공
- 법인 청산시 잔존하는 재고자산 형태의 과세대상 재화와 특정자산(당초 판매 목적이 아니었던 경우)
- 본지점 또는 지점간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국세청장 승인하여 통합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위탁품의 양도
- 이슬람금융 구조하의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과세표준의 산정

○ 재화·용역의 공급 가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수입업자·제조업자에게 차등 적용되는 사치품 매출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주사업장 총괄납부(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본·지점간 또는 지점 간의 물품 출하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과세표준은 거래 당사자간 합의한 거래가격을 의미하나, 아래 사항을 포함한 특정사건이나 상황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 관계사간 거래, 법인 청산시 잔존하는 과세대상 재화, 당초 판매목적이 아닌 재화 판매의 경우는 시장가치
- 자가소비 또는 과세대상 재화의 내부 이전(예, 지점간 또는 본지점간)의 경우 매출원가
- 경매관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의 경우 경매(낙찰)가격
- 중개상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의 경우 합의된 가격
- 팩토링서비스의 경우 수수료 및 할인료 합계액의 5%
- 비디오 및 오디오 녹화 제품의 경우 평균 판매가격

- 영화의 경우 필름당 평균 관람료
- 자가건설 건물의 경우 토지 구입가를 제외한 총 건설원가의 4%
- 담배 제품의 수입, 양도의 경우에는 소매판매 가격
- 포장 선적 서비스, 여행 및 여행 대행업의 경우 실제 청구금액의 10%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최종목적지 도달 전 중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나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 합병, 인수, 청산, 분할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의 경우
  ※ 합병 당사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공제
-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해당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동 제품의 매출세액과 상계
- 세관당국의 관세추징액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과 상계 가능
- '01.1부터 매입세액은 그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당월신고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해야 함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사업무관 지출관련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신고하지 않은 매입
-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불비된 매입세액, 간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정보요건 미비에 의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자의 이름,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 재화와 용역의 내용(type), 수량, 공급가액과 할인액
- 부가가치세 금액

- 사치세 금액
- 코드, 일련번호, 계산서 발행 일자
-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이름, 직급, 사인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그 지급을 받은 시점
- 단계별로 업무를 제공할 경우 계약에 따른 해당금액 지급 시점
- 재무부에서 정하는 기타 특수한 경우

□ 세율구조

○ 기본세율은 10%이나 정부 규정에 따라 최저 5%, 최고 15%로 할 수 있음
- 재화의 수출, 무형재화의 수출, 용역의 수출(수출품 임가공 용역거래 포함) “0”세율 적용

○ 면세 제도 운영

〈주요 면세재화와 면세용역〉

면세 재화	면세 용역
• 원재료(원유, 천연가스) • 기초생필품 • 호텔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료 • 화폐, 금괴, 어음	• 의료보건용역, 인력공급용역 • 인재파견서비스, 호텔업 • 교육, 종교 예술용역 • 은행, 보험,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리스용역 • 주택 등 임대용역 • 유흥세가 부과되는 유흥용역 • 광고를 제외한 방송, 우편 등

○ 기타 부가가치세 면세
- 전략적 재화로 지정된 과세대상 물품의 수입과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농업, 농장, 산림생산품, 축산생산품, 사냥포획물, 수산업생산품 및 양식품

• 전기료, 단 6,600와트를 초과전력으로 필요로 하는 고급주택 경우는 제외
• 상수도 또는 음료수 파이프에 따라 공급되는 음료
• 소, 닭(가금류), 어류의 사육 및 그 원료
• 농업, 농장, 산림, 낙농업용에 활용되는 종자, 씨앗류

- 특정한 국가적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의 양도나 수입은 면세
• 군대나 경찰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기, 탄약, 군함차량
• 법정예방접종용의 소아예방 백신
• 일반교육 및 종교관련 서적
• 국영 선박 및 어업회사의 선박과 부품류
• 국영 항공회사의 항공기 및 부품류
• PT.Kereta Api Indonesia사에 의한 철도차량과 부품류
• 저가격의 가옥, 학생용 주거
• PT.Kereta Api Indonesia사에 의한 철도차량의 유지와 수선 서비스
• 선박의 임대, 항만, 선박유지를 포함하는 국영 선박 및 어업 서비스
• 항공기의 임대 및 유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국영 항공회사 서비스
• 저가격의 가옥, 종교상 예배목적 건물의 건설에 관한 서비스
• 저가격 가옥의 임대

2) 부가가치세 징수 구조

□ 매입세액공제제도

○ 세금계산서 기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공제 제도 채택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계산

$$\text{부가가치세} = \frac{\text{부가가치세율}}{100 + \text{부가가치세율}} \times \text{공급대가(부가가치세포함)}$$

○ 재화, 수입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전액 납부

- 1개월 단위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공급세액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월로 이월하거나 환급

※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대리납부자) 제도

- 인도네시아의 부족한 세무행정력을 벌충하기 위한 제도
- 국영기업, 석유·가스 등 생산 분사 계약의 계약자, 광물채굴업의 계약자, 국영·공영은행 등 특정기업체가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자(일부 국영기업)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고 세무당국에 직접 납부
- 대리징수자는 징수업무만 분담할 뿐 환급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면 세무서에 환급 요구

□ 가산세: 2%

○ 적용요건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PPKP)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PPKP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발행한 경우

○ 이 외에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하거나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본래 적정하게 계산된 세액의 100%를 가산징수

- 환급금 한도액은 매출액의 7%, 신고 후 2월 이내 처리가 원칙

3) 부가가치세 환급

○ 일반 납세자

- 매 회계연도말에 환급신청 가능, 국세청은 환급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 결정(12개월 이내에 결정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
- 환급 근거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성실납세자 및 특정 납세자

- 신고기한 내에 적절히 신고하고 체납이나 범죄사실이 없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세무당국이 성실납세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자격을 부여함
-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자, 부가가치세 징수자에게 공급하는 자, 제조 이전단계의 회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 시 매월 환급이 가능

□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 2010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인도네시아 출국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 최소 신청 가능금액은 500,000 루피아

8. 수입관세

□ 개요

○ 수입관세는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에 0%~150%가 부과되며, 관세가격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level)에 의해 계산함

□ 관세율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입관세를 낮추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특정한 산업과 제품의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음

구분	품목	관세율(%)
자동차	상업용	0 to 50
자동차 부품		0 to 10
배	배, 보트, 부상 구조물	0 to 5
전자제품		0 to 12,5
신발류		5 to 25
음료, 주류	Ethyl alcohol, 맥주, 와인, spirits, 음료	5 to 30, Rp. 14,000 to Rp. 125,000/ltr
필수 오일 및 합성수지	방향제	5 to 150
농산품	동식물	0 to 25
직물, 직물제품, 액세서리	가방, 마구, 의상, 의류 액세서리	5 to 15
기타	화학제품, 약제류, 플라스틱, 고무 등	0 to 25

○ ASEAN 국가간 관세율

- ASEAN 국가들은 적어도 40% 이상의 ASEAN 국가가 생산한 재화에 대해 각각의 국가끼리 직접 운송되는 거래를 할 경우 일정한 경감율이 주어짐

- 이는 대부분의 재화에 대하여 0%～5%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ASEAN 국가끼리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 기타 FTA 관세율

- 인도네시아는 또한 다음의 아시아 국가들과 별도의 FTA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ASEAN- China FTA(ACFTA)
  - ASEAN-Korea FTA(AKFTA)
  - ASEAN-India FTA(AIFTA)
  - 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IJEPA)

□ 관세 경감/면제/유예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과 국내투자를 증진시켜 국내와 수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세 경감/면제/유예를 제공하고 있음.

○ BKPM Masterlist, 보세구역, 보세창고, KITE facilities와 Batam, Bintan 및 Karimun의 자유무역지역(FTZ:Free Trade Zone)을 포함

○ 투자청 자재리스트 면제(BKPM Masterlist facility)

- BKPM Masterlist facility는 적격한 기계류와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

○ 보세구역(Bonded zone)

- 보세구역(Kawasan Berikat/KB)은 적어도 완제품의 생산가치의 50%(반제품의 경우 40%)가 수출되어질 경우 수입원자재와 수입 자본설비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수입 세금(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소득세)를 면제

○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 보세창고는 재화가 국내시장에 도달할때까지 수입관세의 납부를 연장시키는 것을 허용(단, 해당 재화가 제조업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함)

○ KITE 면제(KITE facilities)

-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면제는 완제품이 대부분 수출된 경우 수입관세의 부과없이 재화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KITE 관세환급은 수입품이 재화로 가공되어져 수출이 이루어질 때 부과되는 관세를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함

○ Batam, Bintan 및 Karimun의 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으로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재화의 이전은 수입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되며, 수입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Article 22조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인도네시아의 Customs area로의 재화의 이전의 경우, 관련 수입관세 및 수입세를 납부하여야 함
- 자유무역지역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요건
  - Business license from the Management Board of FTZ(Badan Pengusahaan)
  - Masterlist from the Management Board of FTZ(관련 재화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함)
  - FTZ 거주자를 위한 소비재는 반드시 등록된 법인에 의하여 공급
  - FTZ내의 관련 관세절차(Customs audit, customs penalty 등)가 적법
  - 납세자(PKP)로 등록될 필요는 없음
- 다른 인도네시아의 관세지역과 보세구역회사로의 이전을 제외하고는 무형의 재화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관세규제환경과 행정처벌

○ 세관은 수입신고서의 제출기일 후 2년 이내에 수입업자의 재화에 대해 재분류 또는 재평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음

○ 행정처벌은 관세청에서 관세가 과소납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년 이내에 1,000%까지 벌금이 부과됨

○ 세관은 수입면허의 사용에 대하여 수입면허일로부터 10년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수입면허의 불법, 탈법 사용에 대해 500%의 벌과금을 부과함

9. 기타 인도네시아의 세제

〈기타 인도네시아의 세제〉

세 목	내 용
특별소비세	• 특정 과세물품의 수입 또는 유통에 부과, 제품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만 과세하고 소비자에게는 추가 과세하지 않음 • 특정물품 용량, 크기 또는 가격 등의 요소에 의거 적용 여부 상이 • 2010.4.1 개정으로 세율이 200%까지 증가
인지세	• 법정 증거력을 발생시키는 각종 계약서, 공정증서, 토지양도증서, 예금증서 등 법에 열거한 문서에 부과 • 3,000Rp 또는 6,000Rp
증권거래세	• 개인 및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가액의 0.1%에 상당하는 증권거래세 부과
기타 제세	• 상속 증여세는 없음 • 교통세(5%), 선박양도세(0.1%), 부동산양도세(5%), 오토바이세 등 • 법인의 자산 재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 10% 소득세가 분리과세

10. 세금우대정책

□ 기계류 수입에 대한 VAT, 사치품 매출세 면세 및 관세인하

○ 국내에서 생산불가능한 원재료로 5%미만 관세 적용품목은 부가가치세의 100%, 5%이상 관세 적용품목은 50%를 초기 2년 간 면세

○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수입시 100%, 해당 자본재의 소모품은 첫 회계기간 1년 간 전액 면세, 부속품은 50%, 예비품은 자본재 매입가격의 5% 한도 내에서 전액 면세

○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차량・선박 등의 수입시 관세를 최고 5%로 인하, 선박・항공기의 예비부품 관세도 0%로 인하

□ 기업합병 등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우대

○ 자산재평가차익과 존속회사의 결손금 간 상계 가능, 상계 후 잔여 자산재평가차익은 10%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5년 내 분할납부 가능)

- 구조조정 당사회사가 국세의 미・체납사실이 없으며
- 합병・결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이전 적어도 2년 이상 사업 활동에 종사
- 국세청이 인정한 방식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 특정분야 및 지역의 세금우대에 대한 규정(Regulation No.1 /2007)

○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소득세 면제(1999.1.14) 규정 대체

* 과거 정부지정 첨단산업분야 투자소득세 면제

- 정부 지정 22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시 소득세 최장 8년간 면제
- 지역: 자바 및 발리지역(3년), 기타 지역(5년)
- 요건: ① 종업원 2,000명 이상 고용시(1년),
  ② 동 투자에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이 20% 이상 지분 확보시(1년)
  ③ 총투자금액(대지, 건물제외)이 2억불 이상인 경우

○ 세금우대 대상 기업

- 2007년 1월 이후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

중 정부가 지정한 15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세금우대 대상 산업분야
  - 섬유산업: 마 등 섬유업, 방직업, 방적업, 직조업
  - 피혁산업: Nubuck 피혁(일명 세무)
  - 화학산업: 항생제 생산, 비타민 C 추출, 올레핀・아로마 제조
  - 석유시추
  - 철강산업: 선철, 합금생산 등
  - 기계장치산업: 석유 및 가스채취용 기계장치 등
  - 자동차산업: 엔진블록, 크랭크, 실린데 헤드, 인젝션 등 생산
  - 전기전자 : 반도체, CDT, CRT, LCD, 배터리 생산 등

○ 세금우대 내용

- 해당 투자자산을 향후 6년간 양도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투자총액의 30% (6년 간 매년 5%)를 순이익에서 감액
- 소득공제 여부 결정은 산업생산 개시일 기준으로 하며 현지실사를 통해 세무당국이 결정
- 세무상 조기 감가상각 인정
- 결손금 이월기간을 5년→10년 연장
- 비거주자에 관한 배당소득세를 20%→10%로 경감

□ 외자유치를 위한 유인정책

○ 2011.08.15 외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면제 등 세제유인정책 발표

○ 법인세 면제

- 적용분야 : 기초금속, 정유,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통신장비
- 투자규모 : 1조 루피아(117백만 USD) 이상
- 혜택 : 개별심사 결과에 따라 5~10년간 법인세 면제
  (신규투자자 외에 사업개시 1년 미만인 기업도 신청 가능함)
- 발효 : 2011.08.15

○ 투자금액 소득공제 허용 적용 범위 확대
- 타이어 산업 추가

□ 상장기업 세금감면

○ 2008년 1월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은 법인세의 5%상당의 세액 감면혜택이 주어짐
- 발행 주식수의 최소 40%이상이 공개되어져야 함
- 발행 주식수의 5%이내를 소유한 주주가 최소 300명 이상일 것
- 상기 두 가지 요건이 세무연도 중에 최소 6개월(183일) 이상 유지될 것

○ 특정연도에 상기 조건 중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함

□ 해외 Loan 및 정부 발주 프로젝트 해외원조 자금

○ 해외 Loan 및 정부 발주 프로젝트 해외원조 자금 관련하여 그 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Special tax treatment)을 적용할 수 있음. 적격한 프로젝트는 정부 프로젝트 계획서 또는 유사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정부 발주 해외 원조 자금에 대한 주된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정부에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다만, 계약이 2000년 6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차(second-level) 계약(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에게는 상기 사항이 해당되지 아니함

○ 주된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정부 발주 프로젝트 해외원조 자금과 관련하여 상품 수입세, 해외 무형자산 및 해외 과세 서비스의 사용에 대하여 수입관세 면제·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수입소득세의 면제 등 세금혜택이 추가로 주어짐

○ 적격한 프로젝트의 제공이 과세대상 재화, 용역서비스의 경우에 주된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적정한 세금계산서을 발행해야 하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징수되지 않음

○ 적격한 프로젝트가 해외 Loan 또는 해외 원조자금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자금조달이 된 경우에는 세금혜택은 해외 Loan 또는 해외 원조자금 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됨

11. 인도네시아의 세무조사

□ 개 요

○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광범위한 세무조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기간도 7일~3월까지 다양

□ 세무조사의 종류

○ 단순 소환조사, 현장 출장조사, 통합조사로 구분

○ 환급 신청시, 전년도 대비 납부세액 감소시, 기타 제3자의 탈세제보 등에 따라 종류를 달리함

○ 현장 출장조사는 세무서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음

□ 조사방법

○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로 구분되며 직접조사는 납세자의 사업장, 사무소에서 실시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그 관련자(은행 공인회계사, 세무 상담원) 등은 세무당국의 서면질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부과

□ 조사기간

○ 소환조사: 2인의 조사관이 소환일로부터 7일 이내 집행

○ 현장 출장조사: 2인의 조사관이 파견 되며 통상 1개월 소요

○ 통합조사: 3인 이상의 조사관이 파견되어 조사에 3개월 소요, 세무서 보다 상급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 부가가치세 조사는 거래징수의 세액보전과 납세자 신뢰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통상 매 분기마다)되나 강도는 낮음

□ 유의사항

○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사관이 요청한 서류 및 정보를 요청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납세자가 특수 관계자간 거래에 연관되어 있다면 해당 이전가격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 한달 이내에 서류 또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은 인정과세 기준으로 납부의무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서류와 정보가 한달 이내에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에 있다면, 향후 납세자가 추징세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음

□ 종료회의

○ 세무조사 말미에 세무조사관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세금정정 내용을 포함한 세무조사결과를 문서로 통보

○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면 납세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써 답변하여야 하며 세무조사관과 함께 최종 토론을 위한 종료회의에 참석해야 함

○ 납세자는 종료회의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납세자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최종기회를 갖게 된다. 세무조사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답변과 종료회의에서의 토론을 거쳐 최초 조사결과를 수정할 수 있음

○ 최종 토론결과는 종료회의록에 기록되며 조사건별로 납세자의 동의 또는 미동의 입장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회의록에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항목 중 세무조사관이 인정하는 항목 및 특정 조사결과에 대한 취소 또는 감액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최종 회의시 세무조사관과 납세자는 회의록 말미에 서명을 하며, 서명은 납세자에게 조사결과가 통보된 이후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함

○ 종료회의에서 확정된 조사 결과는 향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추징액에 포함됨

□ **세무조사 결과물**

○ 법적으로 규정된 세무조사 결과물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Tax Assessment Letter:SKP)와 징수통지서(Tax Collection Letters:STP)로 구성됨

○ 징수통지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포함하지 못하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사용되며, 세무당국은 당해연도의 특정기간동안의 납부세액 및 지연이자를 결정하는데 이를 사용함.

□ **조사조직 정비**

○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시 이전가격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었지만 특별한 조사기구가 없었으나, 2010년 과세당국 내에 이전가격조사팀을 신설함

□ **'11년 조사계획 및 선정기준**

○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2011년 조사 세수실적 9조 루피아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전망으로 이와 관련 Circular Letter (No. 29/PJ/2011 (SE-29))를 통해 세무조사 추진방향 및 계획을 발표

○ 조사대상

- 중점 조사 대상(개인)
  - 포브스 잡지 선정 인도내시아 최대 재산가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고위 관료
  -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의사, 예술가, 체육인 등)
  - Tax Service Office별 5대 고액 재산가
  - 기타 고액 자산가
- 중점 조사 대상(산업)

NO	산업구분코드	산 업
1	11000	광업 및 광업 서비스
2	17000	섬유/봉제
3	19000	가죽 및 신발
4	21000	paper industry
5	24000	화학 및 화학제품
6	26400	시멘트, 석회 제품
7	34000	자동차
8	45000	건설
9	50000	모터사이클, 렌탈, 자동차 유류 소매
10	51000	국내 대규모 상사
11	54000	수입 무역상(자동차, 모터사이클 제외)
12	55200	레스토랑, 케이터링 서비스
13	60000	육상 운송, 파이프라인 운송
14	64200	통신
15	70000	부동산
16	74300	광고서비스

* 16개 산업 이외에 대기업,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이전가격에 초점을 두어 세무조사 추진 예정임

12. 이전가격과세제도

1) 이전가격과세제도 개요

□ **이전가격**

○ 이전가격이란 동일 계열기업그룹에 속한 기업들간에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을 말함

○ 이전가격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 시장가격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계열기업그룹의 이익관리 및 회계방침에 따라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있음

○ 이전가격의 조정은 하나의 기업이 동일 계열기업 그룹 내 다른 기업과의 거래 시 당해 그룹전체로서의 조세부담을 최소하기 위하여 가격 또는 비용의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그룹 내 다른 기업의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함

□ **이전가격과세제도**

○ 이전가격 조정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조세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국이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고 있음

○ 이전가격과세제도란 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함

○ 인도네시아 국세청도 이전가격과세 관련 법령 정비와 더불어 외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등 세무관리을 강화하고 있음

□ **특수관계자 범위**

○ 지분의 100분의 25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납세자 혹은 지분 100분의 25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납세자가 지분의 100분의 25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각각 소유하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다른 납세자

○ 거래당사자자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직·간접으로 동일한 통제를 받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납세자

○ 혈연 혹은 혼인을 통해서 직·간접으로 1촌 이하의 가족관계가 성립한 경우

□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10조 1항

- 제18조 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의 판매 혹은 구매가격은 실제로 수취하거나 지급한 가격을 말하여 특수관계 거래의 판매 혹은 구매가격은 수취하거나 지급받아야 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 Acquisition cost or selling price in an arm''s length transa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18 shall be the amount actually paid or actually received; whereas, in a transaction between related Taxpayers, is the amount which should have been paid or received

○ 소득세법 제18조 3항

- 국세청장은 공정성과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기타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소득과 비용을 재계산 할 수 있다
- Director General of Taxes is authorized to reallocate income and dedu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to characterize debt as equity for the purposes of the computation of taxable income to assure that the transaction are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parties using price comparison method between independent parties, resale price method, cost-plus method, or other methods

□ 이전가격 시행령(PER-43/PJ/2010) 주요 내용

○ 적용범위(Scope of regulation)

- 매출, 이전, 매입 또는 유·무형재화의 취득
- 렌트, 로열티 또는 유·무형자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의 지급
- 서비스 관련 수익 또는 비용
- 원가 배분
- 금융상품의 이전, 취득 및 관련 수익, 비용

○ 비교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

-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 유형자산 : 자산의 물리적 형태, 품질, 내구성, 공급량
  - 무형자산 : 거래 형태(license 또는 판매), 자산의 종류, 보호기간·정도, 기대효익
- 관련된 거래당사자의 기능 분석
  - 유사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 부담하는 위험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
  - 기능 :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구매, 영업, 판매, 광고, 수송, 금융, 관리
  - 위험 : 재고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외환손실위험 등 재무위험, 투자위험
  - 자산 : 사용자산의 종류, 사용연수, 시장가치, 위치, 재산권 등
- 계약조건
  - 계약서 분석을 통해 기능과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래당사자 간에 분담이 되었는지 분석하는 절차로 대금 결제형태, 매출 및 구매량 조건, 사후보증기간 및 조건, 신제품과의 교환 및 변경요구권, 면허권 및 약정의 존속기간, 철회권, 갱신권, 신용 및 지급기간의 변경 등의 요건을 분석
- 경제적 환경

- 시장의 지리적 위치 및 규모, 도·소매여부, 거래시기, 경쟁의 정도, 수급상황, 대체재의 존재여부, 소비자의 구매력, 정부규제의 정도, 생산요소의 가격

- 사업전략
  - 사업전략 작성주체, 시장침투전략존재여부, 시장점유율정책

○ 정상가격산출방법 선택(Transfer pricing methods)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
- 재판매가격법(RPM)
- 원가가산법(CPM)
- 이익분할방법(PS)
- 거래순이익율방법(TNMM)

* PER-43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시 반드시 CUP를 우선 선택하고, 비교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RPM 및 CPM을 적용하도록 규정

* PS 및 TNMM은 상기 방법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만 적용 가능

○ 정상가격범위(Use of a range)
- PER-43은 단일의 정상가격 또는 정상가격 범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 정상가격 범위 적용 시에는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를 사용

○ 이전가격자료형식(Format of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이전가격 서류에 대한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최소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회사의 개요 (회사의 조직구조, 주주 지분 구성, 비즈니스 활동, 경쟁사 리스트 및 비즈니스 환경 등)
  - 가격 정책 또는 원가 배분 정책
  - 비교 가능성 분석
  - 비교 가능 회사 리스트
  - 정상가격 산출 방법

○ 과세당국에 의한 이전가격 조정

-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관계사거래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함
- 납세자의 이전가격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국세청은 별도의 분석을 통해 관계사 거래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음

○ 대응조정(Correlative adjustments)

-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및 타 과세관청의 이전가격의 조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소득이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납세자의 소득을 재산정할 권한이 있음.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상호합의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MAP and APA)

- 상호합의절차(MAP)과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가 가능함을 명시

2) 이전가격분쟁 해결

□ 사후적 분쟁해결 절차와 사전적 분쟁해결 절차로 구분

사후적 분쟁해결 절차	사전적 분쟁해결 절차
○ 국내불복절차 ○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MAP)	○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 일방 APA(과세당국과 납세자) - 쌍방 APA(2개이상의 과세당국)

□ 상호합의절차(MAP: Mutual Agreement Pocedure)

○ 상호합의절차 관련 시행령 PER-48/PJ/2010 발표

○ 국가간의 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당국간에 거치는 합의절차를 말하며,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우리나라 국민 혹은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는 경우 거주지국 과세당국인 우리나라 국세청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ment)

○ APA 관련 시행령 PER-69/PJ/2010 발표

○ 현재 일방, 쌍방, 다자 APA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번 APA 시행령은 주로 일방 APA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주요 내용

- 시행령은 신청전 미팅, 공식 신청, APA 심사, APA 승인, 이행 및 평가 등 5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전 미팅(Pre-lodgement meeting)

- APA 사전 미팅 신청서(Form APA-1) 및 첨부서류
  - 정관(Article of Association) 사본
  - 사업내용
  - 조직 및 출자 관계
  - 주주 구성 및 개요
  - 납세자와 주주와의 거래의 성격
  - 기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및 거래의 성격
  - APA 신청거래에 대한 설명
  - 정상가격산출방법
  - 선정 이유 및 적용분석(기능분석 및 비교가능성 분석 포함)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 및 조건 분석
  - 회계시스템
  - 생산, 의사결정 구조 설명자료
  - 동일 혹은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에 대한 정보(시장점유율 및 특성 포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세무신고서 사본
  - 기타 납세자가 관련있다고 판단한 자료

○ 신청전 미팅 요청 심사

- 국세청은 APA 신청전 미팅 요청후 3개월 내에 미팅 수락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신청 거절시 문서로 통보하며 신청자는 1차 신청전 미팅 거절 후 재신청 가능

○ 공식 신청(Filing a formal APA request)

- APA 신청전 미팅 완료 후 추가서류(Form APA-2) 제출
- Form APA-2
  - APA 신청전 미팅 결과 요약
  - 정상가격산출방법 상세자료 및 선정 이유 설명 자료
  - 정상가격산출방법 결정에 기본이 된 전제조건에 대한 설명자료
  - 선정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정상가격에 일치함을 설명하는 자료
  - 중요한 가정(critical assumption)에 대한 상세분석 자료

○ APA 심사

- 주요 논의사항
  - APA 적용 대상거래와 대상 사업연도
  - 비교가능성 분석(비교가능거래 선택 및 결정)
  - 적정한 정상가격산출방법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 기타 다른 국가와 APA를 체결할 필요성 여부 검토
-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APA 논의는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되며 쌍방 APA의 경우 다른 과세당국의 개입으로 논의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APA 승인

-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APA 신청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되면 공식 APA 합의서를 작성하게 됨
- 합의서 주요내용
  - APA 적용대상 기업 및 관계회사의 이름 및 주소
  - 적용대상 거래
  - 적용대상 연도

- APA의 일반적 규정 사항
- 합의된 정상가격산출방법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정
- 대상거래의 정상가격 혹은 이윤(정상가격범위)
- 연차보고서 등 APA 이행 의무사항
- APA의 법률적 효과
- 정보비밀유지 조항
- 한계 및 재검토
- APA 문제 해결
- 절차(해석상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등)

- APA 공식 합의서는 APA 논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서명하여야 함
- 납세자는 APA 공식 합의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서면으로 APA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 APA 이행 및 평가

- APA를 체결한 납세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연차보고서(Annual Complianc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함
- 연차보고서 주요 내용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준수 여부
  -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시 일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설명자료
  -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시 중요한 가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정확성에 대한 설명

○ APA 경정 및 취소

- APA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로써, 국세청은 아래의 경우 APA를 경정하거나 취소하고,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 거주자가 사전승인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주자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경우

- 거주자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중요한 가정을 위반한 경우
- 사전승인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 거주자가 조세범칙에 관여된 경우

○ APA 합의 기간

- APA 합의기간은 합의된 연도로부터 최대 3년, 재연장 규정 없음
- 소급적용(rollback)
  - 과세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는 경우
  - 과세연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을 하지 않은 경우
  - 조세범칙 혐의가 없을 경우

○ 세무조사와 APA

- APA 체결로 세무조사가 면제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 APA의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

3) 효율적인 이전가격과세 대비

□ 중점 조사 대상

○ 3년 연속 결손법인으로서 관계사 거래가 많은 외국계 기업, 국세청이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 등은 세무조사 준비 필요

□ 이전가격 정책 수립

○ 이전가격 세제는 조세회피 의도나 고의성 여부 불구하고 당해 거래에서 적용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전가격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절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준비된 회계처리

○ 이전가격 조사에 대비하여 이전가격의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

- 인도네시아 이외의 지역의 관련기업과의 거래도 함께 고려하여 이전가격을 설정하고, 유형자산의 매매·무형자산의 이전과 사용·용역제공 및 자금유통 등에 관한 각종 계약서를 준비
- 관련기업간의 거래 관련 가격표를 작성
-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비 물동거래(로열티, commission, service)에 대한 실재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질(substance) 확보에 주력

□ 조사 대응 철저

○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세무조사 진행과정에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검토 선행 후 제출

- 잘못된 정보나 불필요한 사항을 제외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조세회피 등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APA를 통한 사전조치

○ 비논리적인 이전가격조사 및 과세, 이전가격 노출 가능성이 큰 경우 APA를 통한 사전적 대응이 효과적임

13. 과세불복제도

□ 세무조정과 추가징수

○ 신고납부를 근간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본인의 세금을 자가 세무조정을 통해 계산·신고납부

○ 추가 징수(Additional Assessment)

- 회계연도로부터 10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경정결정 후 추징 가능
- 추가징수 시 해당 추납세에 100%의 벌금 부과
- 시효기간인 10년 도과 후에도 범죄로 인한 탈세의 경우 추가징수가 가능하며 100% 벌금 외에 48% 벌금(기간이자) 가산

□ 이의제기

○ 부당·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대상

- 납세고지, 과세처분, 추가징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의 환급청구

○ 이의제기

- 과세처분 등이 있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이의제기 이후 1년 이내에 결정
- 1년 이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
-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다 하더라고 세액납부를 지연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없음

○ 전부 또는 일부의 이의신청내용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납부 결정서에 준해 초과 납부한 세금 및 배상금(월 2%, 최고 24개월분)이 지급됨

□ 소(appeals)의 제기 및 소송(suits)

○ 소(Appeals)의 제기

- 이의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 제기
- 단, 상소제기 전에 추징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 소송의 제기

-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종류의 세금징수문서(경고서, 자산압류명령, 자산경매발표 등 문서), 추납결정서, 당국의 과세통지 변경결정서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에 소송 제기 가능
- 인도네시아 조세법원이 조세 관련 소송을 담당
- 소송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 의무화
- 소송제기가 조세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고신청

- 국세심판소의 판결이 원고 또는 피고 측 허위 증언에 기초했다고 생각되거나, 이후의 형사재판에서 증언내용이 무효라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심판소에서 상소, 소송 중에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 판결을 재결정할 수 있는 새롭고 중요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발견된 경우
- 국세심판소의 판결이 명백히 세무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최고재판소에 국세심판소 결정에 대한 재고를 신청

14. 압류 등 체납처분

○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수령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고지받은 과소납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연납부시 1개월당 2%씩의 지연이자가 추가됨. 이의신청, 수정요구, 상소 또는 재판 등을 한다 하더라도 과소납부 세금은 납부하여야 함

○ 납세자가 세금추징통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또는 상소를 하려면, 최소한 종료회의에서 납세자가 동의한 세금은 납부해야 하며, 세무당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국세심판소의 상소에 대한 결정이 납세자의 의견과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만 징수됨

○ 과소납부세금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압류경고등을 통한 체납처분 실시함

- 과소납부세금이 마감기한 후 7일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 경고장 발부
- 과소납부세금이 경고장 발부 후 21일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 압류경고장 발부
- 과소납부세금이 강제조치통보서 발부 후 48시간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 재산몰수명령서 발부
- 과소납부세금이 재산몰수명령서 발부 후 14일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 몰수재산에 대한 경매공고
- 과소납부세금이 경매공고 후 14일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 공개경매 실시



Ⅲ.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1. 인도네시아 경제활동 환경
2.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절차
3. 인도네시아 외환제도
4.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CORRIDOR 계획

Ⅲ.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1. 인도네시아 경제활동 환경

□ 개요

○ 정치상황

- 2009.7월 대통령선거에서 수실로 밤당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로 재선되었고, 유도요노 정부는 집권 2기(2009.10-2014.10)에 강력한 개혁과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시장상황

- 2011년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발표한 기업환경(Ease of Doing Business annual survey) 순위에서 전세계 183개국 중 121위를 차지
- 2009년 4.5%대, 2010년 6.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억4천만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매우 큼

○ 통화정책

- 2008년 상반기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국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금리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불안과 통화불안을 성공적으로 해소
- 2011.6월에는 루피아 화폐의 가치와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의 급여를 루피아로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이 법률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4.8월부터 시행할 예정

○ 정부역할

- 제2기 유도요노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관료주의 타파,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하여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경제목표를 두고 있음

-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도로, 철도, 항만, 전기 등 부족한 인프라 개발, 높은 실업률 및 빈곤율, 소수 인종 분리독립 문제 등 사회불안 요소 해결

○ 규제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부터 광물은 부가가치 증가를 위해 가공된 상태에서 수출돼야 한다는 규제를 추진(Mineral &Coal No4. 2009)
- 2011년 5월 20일 대통령령(No.11/2011)에 따르면 국가개발사업 목적 이외에 산림과 이탄습지 개발을 금지, 2011년 5월 20일 이전에 산림부에서 허가한 산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토지제도

○ 특징

- 토지, 물, 공중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 권리
  인도네시아 헌법 제33조에 토지와 물과 공중은 국가에서 장악하며, 국민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
- 토지에 대한 주민의 전통적인 공동 소유권 인정
  관습법상의 조상대대로의 주민 공동소유형태의 사업장에 대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주민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함
- 토지 보유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카르타의 경우 한 가족 또는 한 법인이 최대 5,000㎡를 보유할 수 있고, 초과 보유시 주지사의 특별허가 요함

○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

- 소유권(Hak Milik)
  토지 소유권은 시한없이 상속되는 권리로써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정 특수 공법인들에게만 허용한다.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함
- 사업권(경작권)(Hak Guna Usaha)

토지 자체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수산업 및 목축업에 경작권을 허용하고,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인도네시아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만 경작권을 보유할 수 있음

경작권의 유효기간은 최초 최장 35년, 연장 최장 25년, 갱신 최장 35년이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시에는 최초 최장 35년과 연장 최장 25년 및 갱신 35년을 합쳐 최장 95년을 허용

- 건축권(Hak Guna Bangunan)

  토지 위에 건물 혹은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이며,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와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에게 보유를 허용

- 사용권(Hak Pakai)

  국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로부터 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로써, 국가 소유 토지, 개발권 토지, 소유권 토지에 부여할 수 있고, 투자 목적 사용권은 최초 25년, 연장 20년, 갱신 25년 총 70년을 일시에 줄 수 있음

○ 외국인의 부동산관련 권리

- 외국인이 보유가 가능한 부동산은 사용권 토지 위에 지어진 부동산이며 단독 주택의 경우는 현재 소유권 혹은 건축권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을 외국인이 매입하여 사용권으로 권리를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소유 가능함.
-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혹은 건축권 토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는 외국인에게 소유를 불허하나, 사용권 토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는 외국인에게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외국인이란 인도네시아에 거주허가서(KITAP/5년 유효) 혹은 기한부거주허가서(KITAS/1-2년 유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함
- 외국인이 정식으로 출자하여 인도네시아에 세운 회사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 분류되므로 사업권, 건축권 혹은 사용권 토지 위에 지어진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외국회사의 인도네시아 지점은 외국인으로 분류되므로 사용권 토지 위에 지어진 부동산 보유만 허용됨

○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일시에 최장으로 연장 가능 요건

- 장기투자이며 인도네시아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투자인 경우
- 투자 업종의 특성상 투자금의 회수기간이 장기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대규모 면적을 필요료 하지 않는 투자
- 국유지를 사용하는 투자
- 사회의 공정심과 공익을 해치지 않는 투자인 경우
- 권리가 주어진 토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

○ 토지 매입시 유의사항

- 토지(부동산)에 대한 권리등기증서(Sertifikat Hak atas Tanah)상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의 명의와 매도자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를 확인하며, 건축권이나 사용권인 경우 권리기한이 있으므로 잔존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 건축허가서(Ijin Mendirikan Bangunan/IMB), 재산세 납부고지서(SPTPBB) 및 납부영수증(STTSPBB), 법인과 거래시 주주총회의 승인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투자의 장 · 단점

○ 장점

- 경제발전 가속화 및 시장개방 확대

  세계경제의 불황과 금융위기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경제는 최근 5년 동안 4.5% ～ 6.3%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루피아화 강세로 인한 구매력 향상 및 민간 소비증가,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 및 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른 성장 기대

- 풍부한 천연자원 종류 및 매장량

  주석 세계 2위, 니켈 5위, 구리 7위, 금 11위, 보크사이트 6위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세계 최대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커피 세계 4위, 팜 1위,

고무 2위, 카카오 2위 등 플랜테이션 재배 국가

-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시장

2억 4천만명의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수도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은 1,118,000루피아(약 125달러)로 베트남(약 72달러)에 비하여 비싸지만, 중국(약 150달러), 캄보디아(약 135 달러)에 비하여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음

○ 단점

- 산업 인프라 부족 및 시설 열악

간선도로,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설비 부족, 장비 낙후로 인하여 컨테이너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등 물류 비용이 비싼편임

- 보호무역주의 와 무역장벽

조세, 관세 등의 비효율적 시스템, 까다로운 입찰규정 및 수출입 규정, 부동산 취득 장애, SNI 등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소가 많으며, 2014년 광물자원 수출금지, 국가개발사업 목적 이외의 산림 및 이탄습지 개발 금지, 중국산 섬유 수입억제와 자국산 섬유업체 보호 등 자국산업 보호 및 규제도 증가

- 내국인 친화적 노동시장

내국인에 대한 해고수당(uang pesangon), 근속수당(uang penghargaan), 송별금(uang perpisah) 지급 규정과, 높은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은 기업주에게 임금부담을 주고 있으며, 낮은 노동생산성, 숙련노동자 부족, 잦은 노동쟁의, 내국인 고용의무 규정 등은 노동시장의 문제점임

2.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절차

□ 투자조정원[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BKPM)]

○ 외국인투자에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

- 1967년 발효된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설립한 Foreign Capital Investment Advisory Board(BPPMA)가 전신임
- 주요 담당 사무 : 국내외 투자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 수립, 신규·확장·변경 투자 등 승인, 투자유망지역, 국내외 합작투자 매치메이킹, 투자 통계 등 정보제공,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문제해결 및 조언

□ 투자법(2007년 법률 제25호)

○ 1967년의 외국인투자법과 1968년의 국내투자법을 통합한 투자에 관한 기본법

투자 이행 원칙(제6조)	법적인 확실·공개·책임·동등대우·출신국가 차별 금지·공동·공정성 효율·지속·친환경·자립·균형발전 및 국가경제 일체 원칙
현지법인 설립 의무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로 사업
국유화조치 금지(제7조)	소유권보장, 국회 입법으로 국유화시 감정시가 배상
자산매각 및 송금 보장 (제8조)	자유로운 송금 보장, 다만 채권자보호, 세금부과, 국가손해 등의 사유 발생시 송금 제한
내국인 우선채용 의무	내국인 교육 및 기술 이전
투자 허용 업종(제12조)	투자 규제 업종외 모든 업종 허용
투자 규제 업종(제12조)	2010.5.25.발효된 규제 업종에 관한 대통령령 2010년 제36호, 투자금지업종, 지분보유 제한 업종, 허가 업종
투자가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제14~17조)	법률상 규정한 투자가의 권리와 의무
조세혜택(제18조)	고용, 투자지역, 업종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 부여

토지 권리에 대한 혜택 (제22조)	사업권(경작권) 최장 95년, 건축권 최장 80년, 사용권 최장 70년
출입국법상의 혜택(제23조)	외국인 투자가에게 기한부 거주 허가
법인 자격 취득 의무	법인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비법인 상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주주의 무한책임
투자 인허가 관할 기관 (제27~28조)	투자조정원(BKPM)

- 투자조정원은 2010.5.25. 대통령령 제36호로 외국인투자관련 투자제한 업종 리스트(Negative Investment List) 개정판 발표
- 에너지, 광업, 건설업, 요식업(문화관광업), 병원업 등 외국인 투자지분 범위 확대
- 주요 농산물 경작은 국내식량 산업보호가 우선, 임업 및 수산업은 종전보다 완화
- 정보통신 산업분야는 통신탑 건설 및 운영은 외국인 투자 불허

○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주요 개정 내역(2010.5.25.개정)

업종	세부 업종	종 전	개 정
문화	요식업 -식당 -여행사 -행사대행, 이벤트 -위락, 스포츠시설 (골프장 제외) -가라오케	외국인지분 50%	○외국인 지분 보유 49~50%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51% 지분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파트너쉽을 맺어야 함
관광	영화관련 서비스업 (스튜디오, 필름 등)	100% 국내자본	○외국인 지분보유 49% 까지 허용
	갤러리, 예술극장	외국인 지분 50%	○외국인 지분보유 67% 까지 허용
위락	호텔(1~2성급)	외국인 지분 50%	○외국인 지분보유 51% 까지 허용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게임서비스업	외국인 지분 50%	○외국인 지분보유 67% 까지 허용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업종	세부 업종	종 전	개 정
	기타숙박업 (모텔, 장)	외국인 지분 50%	○ 외국인 지분보유 49～51%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순수 외국자본 49%까지 허용, 51%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파트너쉽을 맺어야 함 -아세안 회원국 투자가의 경우 인니 동부(술라웨시, 누사똥가라, 알루꾸, 빠뿌아)지역에 한해 51% 지분보유 가능
	여가 오락 스포츠업 (골프장)	외국인 지분 50%	○ 외국인 지분보유 49～51%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순수 외국자본 49%까지 허용, 51%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파트너쉽을 맺어야 함 -아세안 비회원국 투자가는 인니동부(깔리만딴, 술라웨시, 동부 누사똥가라, 벙꾸루, 잠비)지역에 한해 51%까지 지분 보유 가능 -아세안 회원국 투자가는 인니동부(깔리만딴, 술라웨시, 동부 누사똥가라, 벙꾸루, 잠비)지역에 한해 100% 지분 보유 가능
	홈스테이	외국인 지분 50%	○ 중소기업만 운영 가능
에너지 광업	10MW이하 발전소	중소기업만 가능	○ 현지기업과 파트너쉽 체결시 가능
	10MW이상 발전소	국내자본만 허용	○ 외국인 지분보유 95%까지 허용
건설 공사	IDR 10억이상 공사	외국인 지분 55%	○ 외국인 지분보유 67%까지 허용
보건 의료	병원업 -병실 200개	메단과 수라바야에 한해 65% 지분보유 가능	○ 외국인 지분보유 67%까지 허용 -전 지역에 가능
	병원장비 (의료기자재 임대)	지방수도(주도)에 한해 49%	○ 외국인 지분보유 49%까지 허용 -전 지역에 가능

업종	세부 업종	종 전	개 정
	기타병원업 (정신재활클리닉) -특수 클리닉 -특수 치클리닉 -건강보조 서비스 건강검진, 연구실	외국인 지분 65%	○외국인 지분보유 65%까지 허용 -전 지역에 가능
	간호/간병서비스 (CPC 93191)	메단과 수라바야에 한해 49% 지분보유 가능	○외국인 지분보유 49～51%까지 허용 -인니 전체는 49%, 메단과 수라바야는 51%
	병원운영업 및 건강증진 서비스 (응급의료 및 피난)	외국인 지분 65%	○외국인 지분보유 67%까지 허용
농업	식용작물 (옥수수, 콩, 땅콩, 커피콩, 쌀, 카사바, 고구마 등)	외국인 지분 95%	○특별면허 취득 및 농림부 장관의 추천서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지분보유 49%까지 허용
	팜 농장(Plantation)	외국인 지분 95%	○종전과 같음
수산 해양	수산물 제조/추출 (양식, 발효, 추출, 어물류 냉동/냉장 생산)	중소기업에만 허용	○현지기업과 파트터쉽 체결시 허용
임업	자연관광 및 에코투어리즘 -물(폭포), 자연체험, 동굴관광 및 기타	외국인 지분보유 25%까지 허용	○외국인 지분보유 67%까지 허용
정보 통신	통신탑 운영/건설	허가, 불허에 대한 언급없음	○100% 국내자본만 가능(외국인 불허)
	멀티미디어/인터넷 서비스 제공(ISP)	현지기업과 파트너쉽 체결시 허용	○외국인 지분보유 49%까지 허용
	공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100% 국내자본만 가능(외국인 불허)	○특별면허 및 허가취득시 허용

업종	세부 업종	종 전	개 정
수배송 운송	행상화물 해외운송 및 취급, 해상 해외 여객수송 서비스	외국인 지분 49% 까지 허용	○ 아세안 회원국에 한해 지분보유 60%까지 허용
산업 제조	인조감미료 (Cyclamate, Saccharine)	투자 불허	○ 식약청 특별허가 취득시 허용
	담배 재배 및 생산	중소기업에만 허용	○ 현지기업과 파트너쉽 체결시 허용

□ 인도네시아 투자 절차



○ 인허가 업무 담당기관

인허가 사항	담당 기관	인허가 내역
상호 사용 승인	법무부	상호 사용 승인서
투자 등록	투자조정원	투자등록서
회사 설립	공증인	설립정관
회사설립 승인	법무부	승인서
소재증명서 발급	동사무소	소재증명서
사업자등록	세무서	납세의무자 세적등록증
부가가치세 관할 지정	세무서	부가가치세 관할 지정서
출자금 불입	주주	자본금 불입각서
계좌개설	은행	계좌
사업장등록	노동국	등록증
회사등록	시, 군 노동국	회사등록확인서
외국인 임직원 정원	노동부	외국인 임직원 정원 승인서
취업 비자 추천	노동부	취업목적 비자 추천서
비자 발급 지시	이민청	비자발급 지시 Cable 발신 확인서
비자	재외 인도네시아 공관	비자 교부
입국신고	지방 이민국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기한부 거주 허가	지방 이민국	기한부 거주허가증
외국인 등록	지방 이민국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고용허가	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서
거소신고	동사무소	거소증
임시 주민등록	군, 시, 구청	임시주민등록증
외국인 숙박 신고	경찰서	외국인 숙박신고증
외국인 신상 신고	경찰청	외국인 신상 신고증
수입업자 등록	투자조정원	수입업자등록증
관세청 등록	관세청	관세청등록증
수입 자본재 관세 감면	투자조정원	자본재 관세감면 승인서

인허가 사항	담당 기관	인허가 내역
수입 원자재 관세 감면	투자조정원	원부자재 관세감면 승인서
사업목적 토지 매입 승인	시, 군, 구 토지사무소	매입승인서
건축허가	시, 군, 구	건축허가서
환경영향 평가	콘설탄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 평가 승인	시, 군, 구	환경영향평가승인서
사업장, 공장가동 허가	시, 군수	사업장장소, 공장가동허가서
사업허가	투자조정원	사업허가서
토지권리	시, 군, 구 토지사무소	토지등기권리증서
외자투자 승인	중앙은행	은행사업허가서
외자투자 승인	재무부	금융・험사업 허가서
광업사업 허가	동력광업부, 주, 시, 군, 구	광업사업허가서

□ 인도네시아 진출 형태

○ 공동 출자 + 공동 경영

- 투자법에 의해 지분을 제한하거나 인도네시아 시장에 처음 진출시 유리
  - • 장점 : 초기 시장진출에 유리
  - • 단점 : 주요 의사결정, 회사 발전계획 수립, 업무처리방식 등 차이 발생

    (예) 포스코 투자(포스코 70, 끄라까따우스틸 30)

○ 공동 출자 + 단독 경영

- 투자법에 의해 지분을 제한하여 공동출자하지만 경영의 효율성 제고
  - • 장점 : 기업운영에 있어 효율성 제고
  - • 단점 : 인도네시아 주주와의 의견차이 발생 가능

○ 단독 출자 + 단독 경영

- 투자법에 100% 외국인 지분보유가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외국인이 선호하는 투자형태

• 장점 : 의사결정, 경영의 효율성 높음
• 단점 : 인도네시아 시장과 회사운영에 경험이 부족하여 경영정상화까지 오랜 시일이 걸림

□ 조세감면 혜택

○ 조세혜택 업종, 사업
-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 우선 순위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 국가경제 전략 산업, 고부가가치 및 신기술 사업
-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 환경 보호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 연구, 개발, 발명 업종
- 조합, 초소규모 및 중규모 업체와 파트너쉽으로 투자하는 경우
- 국산품 자본재, 기계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세제상 혜택 내역
- 이익금이 일정한 기간에 투자된 자본금의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법인세 감면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 혹은 장비 수입에 대하여 수입관세 면세 혹은 감세
- 일정한 기간 일정한 조건으로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부자재의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면세 혹은 감세
-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 혹은 장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혹은 유예
- 가속 감가상각 혜택
- 특정지역에 위치한 특정 업종에 대하여 재산세 감세 혜택
- 법인세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은 국가경제에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고부가가치를 내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업종에 투자한 투자가에게만 가능

- 기계 혹은 기타 자본재를 교체하는 투자가에게 수입관세 면세 혹은 감세
-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닌 외국인투자에는 세제상 혜택 없음

3. 인도네시아 외환제도

□ 내부투자

○ 외환통제가 없어 투자자들의 자금 반출입 자유 보장, 단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익은 합작 투자의 회계장부에 미실현이익으로 인식

* 환차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환차익은 배당의 원천이 될 수 없으나, 청산시는 송금자산의 일부를 구성

○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 투자가 승인되면 총 투자액은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됨

□ 현금계정

○ 회계단위는 루피아가 원칙이나 외화계약도 인정, 인도네시아정부는 복수통화바스켓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연동

○ 주요 교역통화의 현금계정 설치는 외국한 취급은행에서 가능, 외국통화의 현금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계정 등은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

□ 자본 및 이익의 자유로운 송금

○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과실송금의 자유)

- 이익배당금, 청산소득, 급여,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로열티 등 인도네시아 투자로 인한 소득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 태환불능에 대한 보장

- 외국인자본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에서 모든 주요 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다고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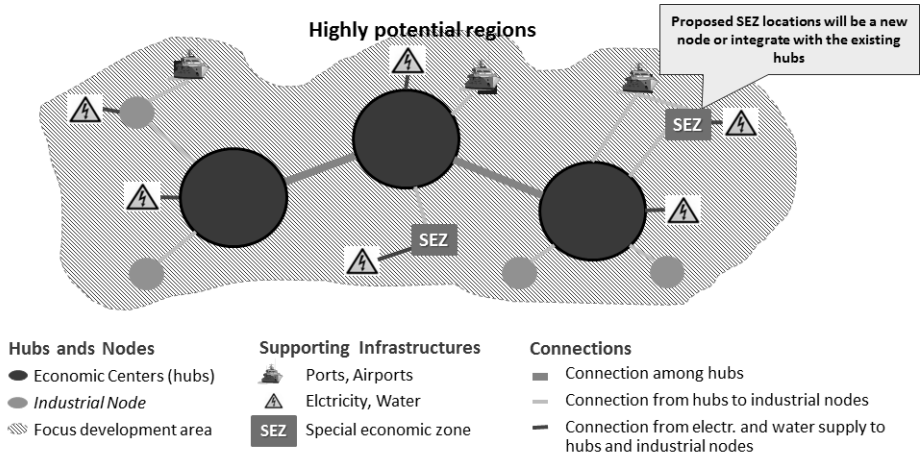
4.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Corridor 계획

□ IEDC(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 개념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연 7~8%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GDP 3조7,600억~4조4,700억 달러를 달성코자 함.

○ 인도네시아의 IEDC(Indonesian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 개념

- IEDC는 주요 연결고리(Main Connectivity)와 지원연결고리(Supporting Connectivity)로 정의
- 주요 연결고리는 경제활동중심지(Economic Center)를 서로 연결하는 고리를 의미
- 지원연결고리는 경제활동중심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를 의미. 산업클러스터 활동을 위해 도로, 항만, 전기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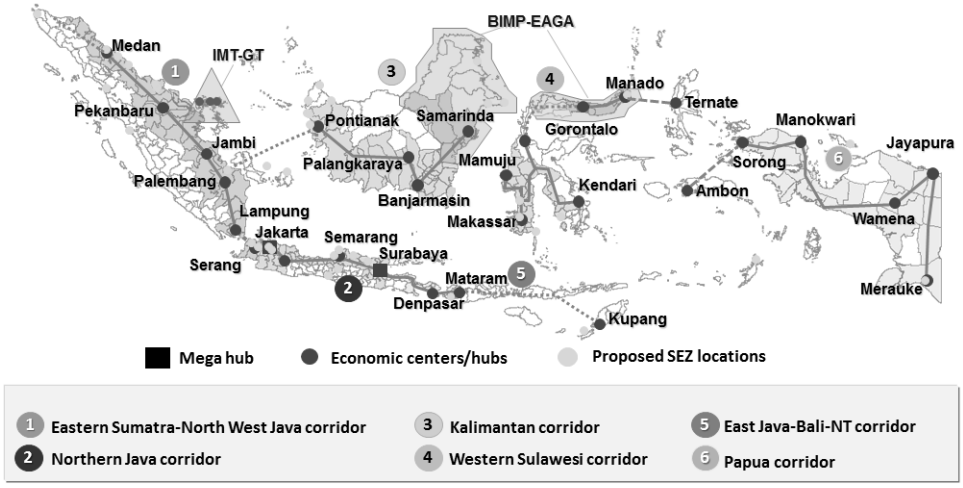


□ 6 Corridor란?

○ 6 Corridor는 각 섬의 주요 산업 특성을 중심으로 설계됐음.

- 동부수마뜨라-북서부 자바 Corridor(자원, 농업, 제조업), 북부자바 Corridor(제조업), 깔리만딴 Corridor(자원 및 농업), 서부 술라웨시 Corridor

(자원, 농업 및 어업, 동부 자바-발리-NT Corridor(농업, 어업, 관광), 파푸아 Corridor(농업, 자원)



(1) 동부수마트라-북서부 자바 Corridor

○ 이 Corridor는 팜, 고무, 석탄을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 Corridor를 자바 Corridor로 연결하기 위한 Sunda 해협 다리 건설이 핵심임

- 경제활동중심지는 Medan, Pekan Baru, Palembang, Lampung, Serang, 북부 Jakarta 그리고 총 10개의 SEZ가 선정됨
- Dumai, Seimangke 지역을 팜 오일 클러스터로 육성하며, Medan 남부 지역과 Pekan Baru 북부 지역을 팜 오일 농장 지대로 육성 개발코자 하며 내륙트럭운송은 Padang 지역으로 연결
- Jambi와 Palembang 사이 지역을 광산 중심지로 육성·개발코자 하며 Batam 지역은 조선 산업 육성지로 선정
- 자원의 내륙 운송을 위해 Medan~Jakarata 간 철도 라인 개발과 Bengkulu ~Palembang을 가로지르는 트럭용 도로 개발

(2) 북부자바 Corridor

○ 이 Corridor는 식품, 섬유, 교통,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

- Jakarta, Bandung, Semarang, Surabaya가 경제활동중심지로 선정됐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총 11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선정됨(Semarang을 중심으로 총 4개의 SEZ가 선정)
- 11개 클러스터 중, Cilegon/Gresik/Tuban은 정유석유화학, Jabodetabek은 아시아 제1의 제조업 클러스터, Lamongan은 조선 클러스터로 선정
- Bandung/Cirebon/Semarang은 섬유 클러스터, Jakarta/Surabaya는 식품 프로세싱 클러스터로 선정
- 이 Corridor 개발을 위해 항만, 4선 철도, Tran Java Toll, 발전소 등의 인프라 개발 진행

(3) 칼리만탄 Corridor

○ 이 Corridor는 농업, 광업, 오일가스, 임업, 수산업 중심지로 육성코자 함
- 경제활동중심지는 Pontianak, Palangkaraya, Banjarmasin, Samarinda이며, Pontianak을 중심으로 5개의 SEZ를 육성할 계획
- 서부 Kalimantan 지역은 팜 오일, Banjarmasin~Samarinda는 석탄 및 석탄액화, Samarinda 지역은 석유가스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Samarinda 근처 Bontang은 LNG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Batu Licin 지역은 철강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

(4) Sulawesi-Maluku Corridor

○ 농업, 어업 그리고 식품 프로세싱 Corridor로 육성
- Makassar, Palu, Kendari 등 7개의 경제활동 중심지를 선정했으며, 특히 Sulawesi 지역을 옥수수와 카카오 농업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
- 니켈이 다량 생산되는 Sulawesi의 Soroako 지역을 니켈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Manado를 어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

(5) Papua-Maluku Corridor

○ 농업, 어업 그리고 금광 Corridor로 육성

- Merauke를 포함해 총 6개의 경제활동중심지가 선정됐으며, Tangguh를 석유가스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Merauke를 식품 프로세싱 중심지로 그리고 내륙 Papua 지역을 미래의 수력발전 육성지역으로 선정

(6) Bali-Nusa Tenggara Corridor

○ Lombok를 중심으로 한 관광, 축산, 곡물 중심지로 육성 계획

□ 8대 주요 프로그램

○ 인도네시아 정부는 6 Corridor 육성 개발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8대 산업을 선정했으며, 각 산업의 핵심육성발전 분야를 선정
- (제조업) 철강, 식음료, 섬유, 기계 및 교통부품, 해운, 농업플랜테이션 산업 발전
- (광업) 니켈, 구리, 알루미늄 산업 발전
- (농업) 팜 오일 및 고무 산업 발전
- (관광) 관광산업 개발
- (통신) ICT 개발
- (에너지) 석탄, 오일가스 발전
- (지역개발) Sunda 해협 다리 건설, Jabodetabek Metropolitan 건설
- (해양) 어업 발전
- (기타) 금융, 보건, 교육 개선

□ 주요 핵심육성 발전분야 상세 설명

○ (Jabodetabek Metropolitan) 자카르타, Banten, 서부 자바와 12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Metropolitan 건설
- Sukarno-Hatta 공항/Tanjung Priok 항구 보수 및 확장, 도심 내 외곽을 잇는 철도, 물류 네트워크, 홍수방제, 음용수, 에너지 공급

○ (Sunda 해협 다리) Sumatera Corridor와 Java Corridor를 연계하는 다리를 건설함으로써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규모의 외연적 확대 목적

- 이 다리 건설을 위해 민관합동 조직을 구성해 입찰 및 구매 활동 전개

○ (팜 오일) 세계 제1위의 팜 오일 생산국 유지를 위해 R &D 연구재단, 금융지원, 교육, 산업클러스터 등의 지원이 필요

- 이를 지원하기 위해 Dumai 항구 처리량 증설, 기타 항구 추가 개발, 팜 운송을 위한 항구직항 철도 건설, 도로, 전기 등의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

○ (고무) Re-plantation을 위한 보조금 지원, 고무연구소, 표준화된 생산 절차 등이 필요

- 이를 위해 Upstream 및 Downstream 산업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Dumai 지역 항구, 도로, 글로브 산업 육성이 필요

○ (석탄) Kalimantan(Bangkuang, Tanjung Isuy)과 Sumatera(Lampung, Palembang) 지역에 Trawler를 로딩/업로딩 할 수 있는 항구 개발 필요

○ (니켈) 니켈 프로세싱에 필요한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특히, Matano/Maholana/Towuti 호수의 수력) 활용이 가장 용이함.

○ (구리) Papua 지역의 구리 채굴을 위해선 도로, 항구 등의 인프라가 필요함.

- Timika 항구 그리고 Jayapura의 공항 개발 필요하며 태양광 발전소 건설 필요

○ (관광) 발리를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 개발을 위해 현재 규모가 작은 발리 공항(Ngurah Rai) 개보수, 크루즈 항 선착장, 전력, 도로 항만 개발 필요

○ (식음료) Jakarta, Semarang, Surabaya, Makassar 그리고 Manado에 항구 개발, 경제활동중심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Toll 도로 건설, Sulawesi/Bali에 위생 수로 건설, Java에 전력증가, Sulawesi/Bali에 코코넛 가공공장을 BULOG에서 처리

○ (섬유)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노동법 개정이 필요, 기계 및 부품 지원 등이 필요하며, Toll 도로, 항구 등의 정비가 필요

○ (교통/기계부품) Java Corridor의 교통/기계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선 OEM 납품 및 교육 환경 정비, 도로, 전력 등이 필요

○ 8대 산업의 각 핵심육성발전 분야 상품/인프라/해당 지역을 선정

8대 산업	핵심 분야	인프라	지역	
			Locus	Corridor
제조업	철강	항만, 도로, 전기	Batulicin, Pangatan, Sei Danau Satui	Kalimantan
	식음료	항만, 도로, 전기, 창고, 수로	Jakarta, Semarang, Surabaya, Makasar, Manado	Java, Bali, Sulwesi
	섬유	도로, 철도, 전기	Semarang, Jakarta	Java
	교통 기계부품	항만, 전기	Jakarta, Beasi	Java
	해운	도로, 방파제, 선착장	Karimum, Lamongan	Sumatera, Java
	농업 플랜테이션	도로, 항만, 수로, 전기	Merauke	Papua
광업	니켈-철	도로, 전기, 음용수	Soroako, Kendari, Kolaka	Sulawesi, Maluku-북 Maluku
	구리	항만, 전기	Timika	Papua
	알루미늄	도로, 항만, 전기	Kuala Tanjung, Mempawah	Sumatera, Kalimantan
농업	팜오일	항만, 도로, 에너지, 물	Sei Mangke, Dumai, Maloy	Sumatera, Kalimantan
	고무	항만, 도로, 전기	Dumai, Medan, Palembang, Jambi	Sumatera
해양	어업	항만, 도로, 에너지	Makasar, Manado, Lombok, Kupang	Sulawesi, Bali-NT, Maluku-북 Maluku
관광	관광	공항, 도로, 항구, 전기	Bali	Bali
통신	ICT	전기, 브로드밴드	-	-
에너지	석탄	항만, 철도, 전기	Lampung, Palembang, Palangkaraya	Sumatera, Kalimantan
	석유가스	도로, 전기	Bontang, Cilegon, Tuban, Gresik, Tangguh	Kalimantan, Java, Papua
지역 개발	Sunda	다리, 도로	Lampung-Baten	Sumatera
	Jabodetabek	공항, 도로, 철도, 에너지, 음용수, 유틸리티	Jakarta	Java



Ⅳ. 진출기업 애로사항

1. 투자
2. 경영
3. 세정

[첨부]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Ⅳ. 진출기업 애로사항

1. 투자

□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

○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에서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에이전트가 사업 진행을 이유로 사례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최근 반부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 특정 사업분야에 합작투자 규정

○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현지인과의 합작투자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분야들이 있어 100% 단독투자가 제한되고 있음(Regulation of President 2007년 111호)

○ 합작투자 의무 분야(외국자본 취득 가능 최대 지분)

- 투자제한 규정에서 소매 분야가 인도네시아 영세기업 보호를 위한 외자 제한업종에 해당됨에 따라 화장품과 같은 매장 중심형 전문기업들의 소매매장 진출이 제도적으로 금지됨(2,000s/m 이상의 Supermarket은 허용)
- 프랜차이즈 분야 또한 외국기업의 직접 소매 금지 및 식당업(51%) 지분 제한으로 진출 시 애로가 많음
- 건설업 대부분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최대 67%로 제한되어 해외 건설기업 들은 인니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홈쇼핑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최대 20%로 제한되어 인도네시아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 하여도 지분율이 적어 직접적인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

2. 경영

□ 노무관리

○ 노동법상 해고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등 임금관련 규정의 불합리로 인하여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이 있음

○ 탄력적인 노동력 운용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자진퇴사자에 대해서는 '해고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불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를 해고시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자진퇴사자들도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해고당하는 것을 선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따라서 현재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

□ 인건비

○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초과근무 수당의 과다함

○ 초과근무 허용시간이 경쟁국대비 과소하며, 초과근무 수당지급기준은 과다한 수준임. 인도네시아의 1일 초과근무한도는 3시간(정상근무시간 8시간), 1주 초과한도 근무는 14시간으로 경쟁국인 베트남에 비하여 초과근무 가능 시간이 상당히 적음

○ 초과근무 수당비용이 최초 1시간은 150%이며, 다음 1시간부터는 200%이고, 공휴일의 overtime은 최초 7시간은 200%이고, 그 다음부터는 300%임

□ 체류비 관련 비용 부담

○ 매년 체류연장을 받아야 하며, 수속 시마다 기술능력 개발기금 명목으로 매년 1,200달러(월100달러)를 납부해야 함

3. 세정

□ 세무조사

○ 2007~2008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경위 확인한 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43.4%, 법인세 환급신청 34.0%,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 요청 11.3% 기타 11.3% 순으로 나타남

○ 세무조사 관련 추징 세목은 법인세 44.7%, 부가가치세 36.2%, 원천징수세 또는 종업원 소득세 10.6%, 이전가격과세 8.5%로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대부분을 차지함

○ 세액 추징 원인으로는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인정 또는 무관심하게 넘어간 부분에 추징이 61.7%, 새롭게 발생한 사항이나 거래에 대한 세무 지식 부족 14.9%, 기타 19.1%, 부주의 또는 자료 준비 부족 4.3%임

○ 세무조사 받은 기업의 87.0%가 추징된 세액이 불합리하며 납득 불가의 입장을 보여 인도네시아 세무행정에 불만이 높은 편임

□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및 커미션 요구

○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1년 이내에 환급받게 되어 있으나, 이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세무공무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 이로인해 세무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조세 법원에 신청하는 비율이 65%정도이며,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 경험상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임

[첨부]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 2007.8.16. 신 주식회사법을 제정 발효하였고, 외국인 투자 회사(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는 반드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회사를 통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의 주식회사는 1995년에 공포된 주식회사법(UU No.1 Tahun 1995)과 그 이전에 제정된 상법의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상법(Kitab Undang_Undang Hukum Dagang/KUHD)은 1877년에 공포되어 대부분의 내용은 아직도 유효하나 주식회사를 규정한 제1권의 제36조부터 56조까지는 주식회사법의 발효와 동시에 1996.3.7.부로 실효되었음

○ 기업의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입법화하였고, 상황에 따라 설립인 혹은 주주에게 무한책임이 주어지고, 정관 혹은 관계 법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법을 범한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 각자에게 무한 혹은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감자, 흡수 합병, 통합 합병, 인수, 분리, 파산 혹은 해산을 위한 주주총회 이전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이해 당사자의 반대를 접수하고, 해결이 있기 전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금하고 있음. 법규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없으면 감자, 흡수 합병, 통합 합병, 인수, 분리, 파산 혹은 해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

○ 소액주주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대주주가 소액 주주를 무시하고 회사를 자의로 경영하면 어려움에 직면 할 수도 있음

1. 주식회사 설립요건

1.1. 설립인의 인원은 반드시 2명이상이어야 한다. 외자투자 허가 신청 시 신청자/주주 후보자가 2명이상 이어야한다. 자연인이나 법인에 구애 없이 둘 이상이면 된다. 부부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민법과 혼인법의 제약을 받는다. 재산분리 약정이 되어 있는 부부간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재산 분리 약정이 없는 부부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 시에는 부부 재산은 공동소유라는 법리때문에 승인을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 외자 투자 회사로 부부가 투자하고자할 때에는 부부의 주소를 다르게 기재하면 거부를 피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법의 규정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주주 부부인 경우에는 단수 주주로 간주되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당할 수 있으니 심사숙고 후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1.2.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5천만 Rupiah이나 업종에 따라 별도 규제가 있다.

1.3. 설립인은 반드시 최초 주주가 되어야 하며 이사 1명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상장법인, 금융법인, 채권발행기업 등은 2명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한 때 외자 투자회사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인 이사 1명 선임을 법적인 근거 없이 투자조정원(BKPM)에서 요청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인원, 선임 및 해임은 주식회사법과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회원일지라도 노동법의 규제 대상이므로 노동법에 외국인 고용을 불허하는 업무담당 이사회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했을지라도 정부에서 고용허가 발급을 불허하고 있다.

1.4. 외자투자회사는 먼저 외자투자 승인서를 획득한 후에 외자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수속 절차를 밟아 필요한 인허가서를 받으며, 내자투자회사와 일반회사는 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이후에 투자승인서와 인허가서를 받는다.

1.5. 주식회사의 설립은 설립인이 설립 정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설립하며, 정관은 반드시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2. 설립 정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 사항

설립 정관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하는 사항은 크게 분류하여 필수 기본 사항과 필수 기타 사항의 2 종류가 있으며, 주식회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른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합작회사인 경우에 합작 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투자승인서, 정관 및 주식회사법 간에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은 주주 간에 합의 된 사항을 정관에 포한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주주 간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1. 기본 필수 사항

2.1.1. 상호 및 회사의 법적 소재지(시/군 표시)

2.1.2. 설립 목적 및 업종

2.1.3. 회사 존속 기간

2.1.4. 공칭 자본금, 발행 자본금 및 불입 자본금액

2.1.5. 주식 수량, 주식의 종류, 주식의 종류에 따른 권리, 액면 가액

2.1.6.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원의 직명(호칭) 및 인원

2.1.7. 주주총회 개최지 및 개최 절차

2.1.8.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선임, 교체 및 해임 절차

2.1.9. 잉여금 사용 및 이익 배당 절차

2.2. 기타 필수 사항

2.2.1. 설립인이 자연인인 경우 : 설립인의 성명, 출생지(시/군), 출생년월일, 직업, 현주소 및 국적

2.2.2. 설립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의 상호, 법적 소재지(시/군), 현주소, 법무부장관의 법인 승인서 번호 및 일자

2.2.3. 최초 피선된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성명, 출생지(시/군), 출생년월일, 직업, 현주소 및 국적

2.2.4. 최초 주주의 성명, 주식 수량, 발행 및 불입된 주식 액면 가액

3. 상호(Nama PT)

3.1. 기존회사의 상호, 유사 상호, 국가 기관, 정부기관, 국제기관, 회사 설립 목적 혹은 업종과 다른 상호, 숫자의 나열, 의미 없는 글자의 나열, 주식회사, 법인 혹은 민사계약 상의 단체라는 뜻을 가진 상호의 사용을 금한다.

3.2. 회사의 법인 자격 신청 전에 상호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신청을 의무화 하고 있다.

4. 법인자격 획득(Berbadan Hukum)

4.1. 회사가 설립되고 설립정관이 나오면 설립인들 공동 명의로 법무부 장관에게 법인 자격 인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한다. 소정 양식이 있으며 기재하는 내용은 상호, 법적소 재지, 회사 존속 연한, 설립 목적 및 업종, 공인 자본금액, 발행 자본금액, 불입 자본금액, 회사의 주소이다.

4.2. 법인 자격 인정 신청 시한은 설립정관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형식 요건에는 자본금 불입 확인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3. 법무부 장관은 법인 자격 인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즉시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신청인/설립인에게 통보한다. 법정 형식 요건을 미비한 신청서에 대하여는 즉시 거부를 통부하고, 형식 요건을 갖춘 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식요건 충족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4.4.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설립인은 30일 이내에 설립정관, 소재지 증명서, 납세의무자 등록증 및 자본금 불입확인서 등 관련 증비서류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4.5. 제출된 서류들이 실질 요건 심사에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은 관련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자격 인정서를 발급한다.

4.6. “6.1”항에서 “6.5.”항까지 상술한대로 법인 자격을 획득 시한은 최장 104일(60일+30일+14일)이다.

4.7. 회사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법인 자격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사 설립 정관은 원인무효로 실효하며 설립인은 회사를 청산하여야 한다.

4.8. “6.4”항에 규정된 시한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식 요건충족 통보는 실효하며, 상술한 “6.2”항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다.

4.9. 법인 자격 인정 신청에 관한 시행규칙은 별도로 장관령으로 규정한다.

5. 정관 개정(Perubahan Anggaran Dasar)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의 직무이나, 개정되는 내용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통보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5.1.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법무부 장관의 정관 개정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5.1.1. 상호 및 회사의 법적 소재지 변경

5.1.2. 회사 설립 목적 및 업종 변경(추가 혹은 삭제)

5.1.3. 회사 존속 기간 변경

5.1.4. 공인 자본금 변경

5.1.5. 발행 자본금 및 불입 자본금 감자

5.1.6. 법인 공개 혹은 비공개로 전환

5.2. “5.1.”항에 열거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개정 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 수령 확인서를 받는다. 법무부 장관의 통보 수령 확인서 일자부터 법적효력을 갖는다.

5.3. 정관 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서 혹은 주주 동의서가 공정증서가 아닌 일반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증서로 변경하여야 하며, 공정증서 변경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관 개정에 관하여 승인 신청 혹은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일반문서 작성 일자로부터 30일후에는 공정증서로 변경을 금하며, 공정증서로 변경된 일자부터 30일이 지나면 승인 신청이나 통보를 금한다. 법무부에서 처리 방법과 시한은 상술한 “6.2.”항에서부터 “6.5.”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6. 회사 등록부(Daftar Perseroan)

1995년 주식회사법에서 규정한 시/군의 상무국에 회사 등록 의무는 사실은 당시에 회사 등록법에서 규정한 회사 등록을 회사들이 잘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주식회사법에서 측면 지원한 사항이며, 현재는 시/군 상무국에 회사 등록이 안정되어 2007년 주식회사법에서는 시/군 상무국에 등록 의무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회사등록법에 의한 시/군 상무국에 등록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2007년 주식회사법에서는 새롭게 법무부에 회사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회사 등록부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1. 상호, 법적 소재지, 회사 설립 목적 및 업종 및 회사 존속 기간
6.2. 정확한 인도네시아 영토 내 현주소
6.3. 설립 정관의 번호, 일자 및 법무부 장관의 법인 인정서의 번호 및 일자
6.4. 필수 기본 사항에 관한 개정 정관의 번호, 일자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서 번호 및 일자
6.5. 필수 기타 사항에 관한 개정 정관의 번호, 일자 및 법무부 장관의 통보 수령확인서 번호 및 일자
6.6. 설립정관을 작성한 공증인의 성명 및 법적 소재지와 개정 정관을 작성한 공증인의 성명 및 법적 소재지
6.7.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성명 및 현 주소
6.8. 회사 해산 정관 번호 및 일자와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한 법원의 해산 결정문번호 및 일자
6.9. 법인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6.10. 공인회계사의 피감사 의무가 있는 회사의 해당년도 재무제표

7. 자본금(Modal)

7.1. 주식회사법 상의 최소 공칭 자본금은 5천만 Rupiah이나 업종에 따라 해당 업종법에 따라 최소 자본금의 액수를 규제하는 업종이 있다.
7.2. 회사 설립과 동시에 공칭 자본금의 최소 25%를 발행하고 주주들이 불입하고 적법한 불입확인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7.3. 현금 출자 이외에 다른 현물 혹은 무형물로 출자도 허용한다. 현물 혹은 무형물로 출자 시에는 시가 혹은 회사, 주,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과 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부동산으로 출자 시에는 회사 설립 정관일자 혹은 주주 총회에서 결의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으로 출자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7.4. 채권의 자본금 전환은 절차법에 따라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5. 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최대 10% 내에서 매입할 수 있으나, 보유가 허용되는 시한은 최장 3년이며, 이 10%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나 이익금 배당권이 없다.

8. 주식(Saham)

8.1. 주식의 액면 가액은 반드시 Rupiah 표기하게 되어 있으나 신규 외자투자회사에게는 Rupiah 표기와 US$ 병용 표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처음 내자투자 혹은 일반회사였던 회사가 외자투자로 신분변경 시에는 Rupiah와 US$ 병용 표기를 불허하고 계속 Rupiah로 표기한다.

8.2. 주식에 액면 가액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권시장법에 근거하여 발행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3. 이사회에게 회사 내에 주주 명단 비치 의무가 있으며, 주주의 성명, 주소, 수량, 번호, 취득일자, 주식의 종류, 주식 당 불입금액,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 보유자의 성명, 상호, 주소, 양도담보권 취득 일자, 등기증 번호 및 부동산으로 불입된 주식에 대한 설명

8.4. 주식을 통한 주주의 권리

8.4.1.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8.4.2. 이익금 및 청산 잔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8.4.3. 주식회사법에 규정된 주주의 제 권리

8.5. 주식에 대한 권리 양도는 주식 양도증서로 하며 양도증서 원본 혹은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8.6. 이사회는 주주로부터 주식 양도증서를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주식 양도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식 양도증서 통보서 수령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8.7. 주식 양도 방법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8.8. 주식에 양도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며 등기된 양도 담보권은 회사의 주주

명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주식에 양도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주주총회 참석 및 투표권은 양도 담보권 보유자에게 있지 않고 주주에게 있다.

8.9. 주주총회, 이사회 혹은 감사회의 결정으로 회사의 불공정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주주에게 관할 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주어져 있다.

8.10. 외자투자회사는 주식 양도에 관한 사항은 투자조정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9. 년간 사업 계획서(Rencana Kerja)

9.1. 이사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년간 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회 혹은 주주총회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서대로 회사를 경영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신년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회사를 경영한다.

9.2. 정관상에 주주총회로부터 신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이사회가 작성한 신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먼저 감사회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10. 년간 사업 실적 보고서 (Laporan Tahunan)

10.1. 이사회는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먼저 감사회의 검토를 마친 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2. 사업 실적 보고서 내용은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0.2.1. 인도네시아 일반회계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10.2.2. 회사 활동에 관한 보고서

10.2.3.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 이행에 관한 보고서

10.2.4. 지난 한 해 동안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들

10.2.5. 감사회의 감사 업무 보고

10.2.6.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명단

10.2.7.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급여 및 제 수당 명세

10.3. 상기 년간 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10.4. 상기 년간 사업 실적보고서는 주주가 자유롭게 검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일부터 회사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10.5. 다음 열거한 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10.5.1. 사회 다수인의 자금을 모금 혹은 관리하는 회사

10.5.2. 일반에게 회사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10.5.3. 상장된 회사

10.5.4. 국영 기업체

10.5.5. 보유 자산 및/혹은 매출이 500억 Rupiah 이상인 회사

10.5.6 법규로 지정된 회사

10.6. 상기 “10.5”항에 해당되는 회사의 재무보고서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는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10.7. 이사회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총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1.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CSR)

11.1. 천연 자원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및/혹은 천연 자원 분야에 관련이 있는 회사는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1.2.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이란 회사가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적절하게 당연하게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회사의 의무를 의미한다.

11.3.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하여는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11.4.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부령으로 규정한다.

11.5. CSR에 대한 이해

회사 부담으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Stakeholders (주주, 채권자, 이사회원, 감사회원, 근로자, 사업파트너, 납품업체, 판매 대리점, 정부, 소비자 및 환경)의 유익을 위하여 회사는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CSR 이행은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을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12. 주주총회(RUPS)

12.1. 구법에서는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기관이라고 규정했으나 신법에서는 주주총회는 이사회 및 감사회에 주지 않은 권리를 가진 주식회사의 기구로써 주식회사법 및 회사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로 되어 있다.

12.2.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가능한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장에 기재된 안건에 한하며, 주주총회 소집자에 “기타 사항”으로 기재된 경우는 100% 주주가 참석하고 참석한 전체 주주가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동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참석한 주주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통과를 허용한다.

12.3.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는 반드시 회사의 법적소재지(시/군) 혹은 회사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시/군)에서 개최해야 한다.

12.4. 전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는 타처에서 개최도 가능하다.

12.5. 주주총회 진행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Teleconference, Video Conference 혹은 다른 전자 매체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반드시 참석자 전원이 서로 육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을 수 이어야 한다.

12.6. 주주총회는 연례 주주총회와 임시주주 총회로 구분한다.

12.7. 이사회는 다음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2.7.1. 인도네시아 일반회계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12.7.2. 회사 활동에 관한 보고서

12.7.3.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 이행에 관한 보고서

12.7.4. 지난 한 해 동안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들

12.7.5. 감사회의 감사 업무 보고

12.7.6.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명단

12.7.7.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급여 및 제 수당 명세

12.8. 임시 주주총회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2.9. 1명 혹은 다수의 주주로써 합친 주식의 액면 가액이 총 발행 주식 액면가액 10% 이상이면 연례 혹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권이 있으며 감사회도 주주총회 소집 요청권이 있다.

12.10. 상술한 “12.9”항의 주주총회 소집 요청권 보유자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주총회 소집을 모든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2.11. 이사회가 법정 시한인 15일 이내에 주주총회 소집을 통보하지 않으면 주주가 감사회에 주주총회 개최를 다시 요청하거나 주주총회 소집 통보를 감사회에서 할 수 있다.

12.12. 이사회 혹은 감사회에서 법정 시한 내에 주주총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는 관할 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통보 허가를 시청할 수 있다.

12.13. 지방법원의 주주총회 주주 직접 소집 통보 허가서는 확정 허가서 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이의 청구가 불가하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주주총회주주 직접 소집 통보 불허 시에는 해당 주주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청구가 가능하다.

12.14. 주주총회 소집 통보는 개최 전 최소 14일 전에 해야 한다. 소집 통보일과 개최일은 14일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나 전체 발행주식의

100%가 참석시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없이 직접 주주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

12.15. 주주총회 소집 통보 방법은 등기 우편 또는 일간 신문을 이용한다.

12.16. 다음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없다.

12.16.1.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2.16.2. 자회사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장악하고 자사주

12.16.3. 회사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자사주

12.17. 회사의 이사회원, 감사회원 혹은 직원이 주주총회에서 표결 시 주주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

12.18. 주주총회 개회 성원 요건은 주식회사법 혹은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

12.19. 성원 미달로 주주총회가 개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재 소집할 수 있으며 재 소집된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주식회사법과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액의 1/3 이상 참석으로 한다.

12.20. 2차 주주총회도 성원 미달로 개회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관할지방법원에 새로운 성원 요건으로 주주총회 개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2.21.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은 주식회사법과 정관에 의결 요건을 더 크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액의 1/2 이상 찬성으로 한다.

12.22. 정관 개정 안건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는 정관에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액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한 주주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2.23. 정관 개정 안건으로 소집된 주주총회가 성원 미달로 개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재 소집할 수 있으며 재 소집된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액의 3/5 이상 참석으로 개회 할 수 있으며,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참석 주주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2.24. 합병, 통합, 인수, 분리, 파산 선고 신청, 회사 존속 기간 연장 또는 해산 안건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는 정관에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액의 3/4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한 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2.25. 합병, 통합, 인수, 분리, 파산 선고 신청, 회사 존속 기간 연장 또는 해산 안건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가 성원 미달로 개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재 소집할 수 있으며 재 소집된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액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참석 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2.26. 전체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 없이 의결이 가능하다.

12.27. 주주총회 소집요건은 중요사항이므로 정관에 상세하게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주주총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주주 간에 혹은 회사 기구 간에 분쟁예방 기능이 높다.

13. 이사회(Direksi)

13.1. 이사회는 회사의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회사의 유익을 위하여 정관 및 주식회사법에서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적절한 경영방침을 세워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13.2. 이사회는 이사 1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하나 사회의 돈을 모아 운용하거나 회사 채권을 발행하거나 상장법인의 이사회의 최소 인원은 2명 이상이다. 이사회원의 인원은 홀수인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짝수 인원시 가부 동수 발생으로 회사업무 처리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파트너 간 분쟁 발생 시 회사 업무 중단 사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13.3. 이사회원의 직무 분장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원의 직무분장을 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3.4. 피선임 전 5년 기간 파산선고를 받은 자,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의 이사회원 또는 감사회원으로 파산선고에 책임이 있는 자 혹은 금융 범죄로 국고에 손해를 끼친 죄로 형을 받았던 자는 이사회원으로 피선 자격이 없다.

13.5. 이사회원에 대한 선임, 교체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3.6. 이사회원의 급여 및 수당 등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3.7. 전체 이사회원은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야 하며 불성실한 경영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원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7.1. 회사의 손실 발생에 이사회원의 잘못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13.7.2. 회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경영을 한 경우

13.7.3. 손실을 가져온 경영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경우

13.7.4. 손실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한 경우

13.8. 이사회원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 시 총 발행 주식의 10%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해당 이사회원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9. 이사회원과 회사 간에 소송발생 시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이사회원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13.10. 상술한 “13.9”항의 상황이 발생 시 회사 대표권 순위

13.10.1 다른 이사회원

13.10.2. 전체 이사회원이 상술한 “13.9”항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13.10.3. 전체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이 상술한 “13.9”항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누가 회사를 대표할 것인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13.11. 이사회는 법원 내외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회의 회사 대표권은 주식회사법,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한이나 조건이 없으나, 주주총회의 이사회의 회사대표권에 대한 결의가 주식회사법과 정관에위배 되서는 안 된다.

13.12. 이사회는 의무적으로 주주 명단,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및 연례 보고서 작성 보존해야 하며 주주의 서명 요청 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13.13. 한 회계연도에 1회 혹은 수회에 걸쳐 전체 회사 재산의 50% 이상을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 요건은 정관에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액의 3/4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한 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소집되는 주주총회가 성원 미달로 개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재 소집할 수 있으며 재소집된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액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참석 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3.14. 회사에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으며 파산선고 발생 이유가 이사회원의 회사경영에 잘못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로 무한책임을 진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14.1. 파산 선고 발생에 이사회원의 잘못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13.14.2. 회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경영을 한 경우

13.14.3. 회사 경영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해상반의 경우가 없는 경우

13.14.4. 파산 선고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한 경우

14. 감사회(Dewan Komisaris)

14.1. 감사회는 회사 및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고 이사회에게 조언을 주는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회의 인원은 감사 1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하나 사회의 돈을 모아 운용하거나 회사 채권을 발행하거나 상장법인의 감사회의 최소 인원은 2명 이상이다. 감사회원의 인원은 홀수 인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짝수 인원 시 가부 동수 발생으로 회사업무 처리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파트너간 분쟁 발생 시 회사 업무 중단 사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14.2. 감사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 1인 개별적으로 직무 수행을 금하며 반드시 감사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감사회의 명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3. 이슬람법에 근거하여 샤리아 원칙으로 경영되는 회사는 감사회 이외에 샤리아 감사회를 두어야한다. 주주총회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자 평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1명 혹은 그 이상의 샤리아 전문가를 샤리아 감사회의 회원으로 선임한다. 샤리아 감사회는 이사회가 샤리아원칙에 따라 회사를 경영하도록 이사회에게 조언하고 이사회가 샤리아원칙대로 회사를 경영하는가를 감독한다.

14.4. 피선임 전 5년 기간 파산선고를 받은 자,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의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파산선고에 책임이 있는 자 혹은 금융 범죄로 국고에 손해를 끼친 죄로 형을 받았던 자는 감사회원으로 피선 자격이 없다.

14.5. 감사회원에 대한 선임, 교체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4.6. 감사회원의 급여 및 수당 등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4.7. 전체 감사회원은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전체 감사회원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7.1. 회사의 설립 목적에 따라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한 경우

14.7.2. 손실을 가져온 이사회의 경영행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감사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14.7.3. 손실 발생 예방 혹은 손실 계속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회에 게 필요한 조언을 한 경우

14.8. 감사회원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 시 총 발행 주식의 10%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해당 이사회원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9. 회사에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으며 파산 선고 발생 이유가 감사회원의 회사경영에 대한 감독 직무 수행에 잘못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감사회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로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9.1. 파산 선고 발생에 감사회원의 잘못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14.9.2. 회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감독을 한 경우

14.9.3. 파산을 초래시킨 이사회의 경영 행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감사 개인적인이해 관계가 없는 경우

14.9.4. 파산 선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에게 필요한 조언을 사전에 해준 경우

14.10. 정관에 대주주, 이사회원 혹은 다른 감사회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1인 혹은 그 이상의 독립 감사와 1인의 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둘 수 있다. 독립 감사 및 대리 감사에 대한 선임권 및 직무 범위 지정권은 주주총회에 있다.

14.11. 감사회는 휘하에 감사회원 1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회계감사위원회, 급여 위원회 또는 인사 추천 위원회 등 감사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감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 합병.통합.인수.분리

15.1. 합병(Penggabungan)이란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자신을 흡수시켜 흡수되는 회사의 모든 자산이 흡수하는 회사의 자산이 되며 흡수하는 회사는 계속 존재하나 흡수되는 회사는 해산 및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15.2. 통합(Peleburan)이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한 개 회사를 만들어 구 회사들의 모든 자산이 신 회사의 자산으로 되며 구 회사들은 해산 및 청산 절차없이 소멸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15.3. 인수(Pengambilalihan)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15.4. 분리(Pemisahan)란 한 회사가 전 자산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사에게 그냥 넘겨 주거나 자산의 일부를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사에게 그냥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사업을 분리시키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15.5. 합병을 계획하는 양측 회사의 이사회는 각자 합병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자의 감사회, 주주총회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합병을 실시한다.

15.6. 합병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5.6.1. 각 회사의 상호 및 주소

15.6.2. 합병 추진 이유 및 합병 조건

15.6.3. 흡수를 받는 회사의 주식 가액에 대한 흡수되는 회사의 주식 가액 산정 방법

15.6.4. 흡수를 받는 회사의 정관 개정안(필요시)

15.6.5. 합병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의 지난 3년간 재무보고서

15.6.6.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의 사업 계속 혹은 중단 계획서

15.6.7. 인도네시아 일반회계원칙에 의거 작성된 흡수를 받는 회사의 Proforma 재무제표

15.6.8. 흡수되는 회사의 이사회원, 감사회원 및 근로자의 신분, 권리 및 의무 처리 방법

15.6.9. 흡수되는 회사의 제삼자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처리 방법

15.6.10. 합병을 반대하는 흡수되는 회사의 주주의 권리 처리 문제

15.6.11. 흡수를 받는 회사의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성명, 급여액 및 수당

15.6.12. 합병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15.6.13. 합병에 참여하는 각 회사의 현황, 발전상황 및 실적

15.6.14. 합병에 참여하는 각 회사의 주 활동 및 합병 회계연도에 발생한 변화

15.6.15. 합병 회계연도 기간 합병에 참여하는 각 회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 설명서

15.7.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에 참여하는 회사의 이사회는 해당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전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 계획을 요약하여 아무리 늦어도 주주총회 소집 30일 전에 한 개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5.8.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신문 공고 일자로부터 늦어도 14 일 이내에 반대 의사를 이사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상기 시한 14일 이내에 이사회에 채권자의 반대 의사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4일 이내에 채권자의 반대

의사가 접수되고 이사회가 채권을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자의 반대 의사를 주주총회에서 해결하도록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자의 반대 의사가 주주총회에서 해결될 때까지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를 실시할 수 없다.

15.9.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합병, 통합, 인수 또는 분리 계획은 공증인 면전에서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15.10. 분리는 순수 분리와 비순수 분리로 구분한다. 2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에게 전체 자산을 넘겨주는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를 분리를 순수 분리라 하며, 자산의 일부를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사에게 넘겨주는 회사가 계속 존속하는 경우를 비순수 분리라고 한다.

16. 회사에 대한 조사(Pemeriksaan)

16.1.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주 또는 제삼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 주주 혹은 제삼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총 발행 주식의 10%이상을 가진 주주, 주식회사법, 정관 혹은 회사와 약정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 자, 또는 공익 보호 차원에서 검찰은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혹은 설명을 얻기 위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회사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6.2. 신청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에 한한다.

17. 해산.청산.법인자격 소멸

17.1. 해산 사유

17.1.1.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17.1.2. 정관에 규정된 회사 존속 연한 종료

17.1.3. 법원의 해산 명령서

17.1.4. 파산 재산 부족으로 파산경비 지불이 불가하여 상업법원의 파산 선고가 취소된 경우

17.1.5.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재산이 지불 불능 상태에 돌입한 경우

17.1.6. 회사의 사업허가서가 취소되고 관계 법규에 의하여 해산해야 하는 경우

17.2. 해산이 결정되면 청산인 혹은 관재인에 의해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하며, 청산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 수행을 금한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청산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원, 감사회원 및 회사기 연대책임을 진다.

17.3. 해산 결의 후 청산이 완료되고 청산인의 청산 보고서를 주주총회 또는 법원에서 승인해줄 때까지 회사의 법인 신분은 존속된다.

17.4. 지방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사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17.4.1. 회사가 공익을 위배했거나 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검찰이 회사 해산을 신청 한 경우

17.4.2.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해산 신청에 의거

17.4.3. 주주,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이 회사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로 해산을 신청한 경우

17.5. 해산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회사 해산을 신문 및 관보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6. 신문 및 관보에 공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6.1. 해산 및 해산 결정 근거

17.6.2.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17.6.3. 채권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17.7. 채권 신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이다.

17.8. 청산인의 직무

17.9. 청산인의 판단에 부채가 재산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선고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규상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주소와 신분이 파악된 모든 채권자가 파산선고 없이 청산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8.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주식 액면 가액 내에서의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주주는 무한책임을 진다.

18.1. 회사가 법인자격을 획득하지 못 했거나 법인자격 획득 조건 미달 시

18.2.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주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회사를 이용한 주주

18.3.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관련된 주주

18.4.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회사자산을 이용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충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18.5. 단독 주주가 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주식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않아 계속 단독 주주의 상태인 경우

19. 경과 규정

19.1.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 시 정관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얻었으며 회사 등록을 필했으며 정관의 내용이 2007년 주식회사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다.

19.2.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 시 아직 법인 자격을 획득하지 못 했거나 개정된 정관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 했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정관은 2007년 주식회사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19.3. 상법 혹은 1995년 주식회사법에 의거 법인 자격을 이미 획득한 회사는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일(2007. 8. 16.) 로부터 1년 이내에(2008. 8. 15.) 정관을 2007년 주식회사법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9.4. 상술한 “3”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한 지방법원의 허가로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19.5.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해야 한다.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세법 등을 2011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14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작성 및 편집

국세청 : 국제협력담당관 김용준

행 정 사 무 관 전지현

세 무 조 사 관 조준구

중부지방국세청 : 세 무 조 사 관 박수용 (031-888-4846)

---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397-141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제작 : (주) 아트팰리스 T. (02)2277-1088